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더 행복한 양산」을 추구한다

---

『인간존중 실현, 인권 공기업 실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 2021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

2021. 11.

 양산시시설관리공단

# 목 차

|                              |    |
|------------------------------|----|
| ① 추진개요 .....                 | 1  |
| ② 인권경영 추진체계 .....            | 3  |
| ③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      | 7  |
| ④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    | 14 |
| ⑤ 2021년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환류 ..... | 41 |
| [붙임1] 기관운영 세부평가 결과 .....     | 44 |
| [붙임2] 주요사업 세부평가 결과 .....     | 68 |



# 2021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2021년 공단의 경영활동,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원,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고객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공단의 인권경영에 대한 체계적 기반 구축, 강화 및 개선하기 위함.

## I 추진 개요

### 1. 추진근거

- 「2021년 인권경영 이행계획」 (감사평가-288, 2021.01.26.)
- 「2021년 인권경영 구제절차 계획」 (감사평가-1647, 2021.06.09.)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감사평가-2589, 2021.08.17.)
-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 ~ 27조)
- 「인권침해 구제절차 지침」 (제3조 ~ 25조)
- 「2021년 경영평가 윤리경영」 지표 이행(인권영향평가)

### 2.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사회적으로 갑질 논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및 인권경영에 대한 중요성 대두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및 인권경영 실천 선도적 역할 수행 요구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인권경영 항목을 독립 지표화하며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
- 공단의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 마련

## II 인권경영 추진체계

### 1. 공단 전략체계

|                     |   |           |                 |               |
|---------------------|---|-----------|-----------------|---------------|
| <b>미션</b>           |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더 행복한 양산』을 추구한다.   |           |                 |               |
| <b>비전</b>           | 더불어 함께하여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일류공기업  |           |                 |               |
| <b>경영목표</b>         |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 고객만족도 90점 | 안전사고 zero       |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달성 |
| <b>핵심가치 (경영방침)</b>  | <b>핵심과제</b>   |           | <b>ESG경영 연계</b> |               |
| <b>윤리·인권 (정도경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인권 우선체계 마련</li> <li>■ 일자리와 삶의 질 개선</li> <li>■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li> </ul>        |           | G(지배구조)         |               |
| <b>소통·개방 (열린경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직접경영 참여 및 의사결정 확대</li> <li>■ 고객이 만족하는 공단운영</li> <li>■ 사회통합문화 구축</li> </ul> |           | S(사회적 책임)       |               |
| <b>안전·환경 (안전경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 통합관리</li> <li>■ 선제적 재난안전 예방활동</li> <li>■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li> </ul>         |           | E(친환경)          |               |
| <b>효율·혁신 (혁신경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량기반 능동적 조직문화 정착</li> <li>■ 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li> <li>■ 공단의 가치 제고</li> </ul>    |           | G(지배구조)         |               |

### 2. 인권경영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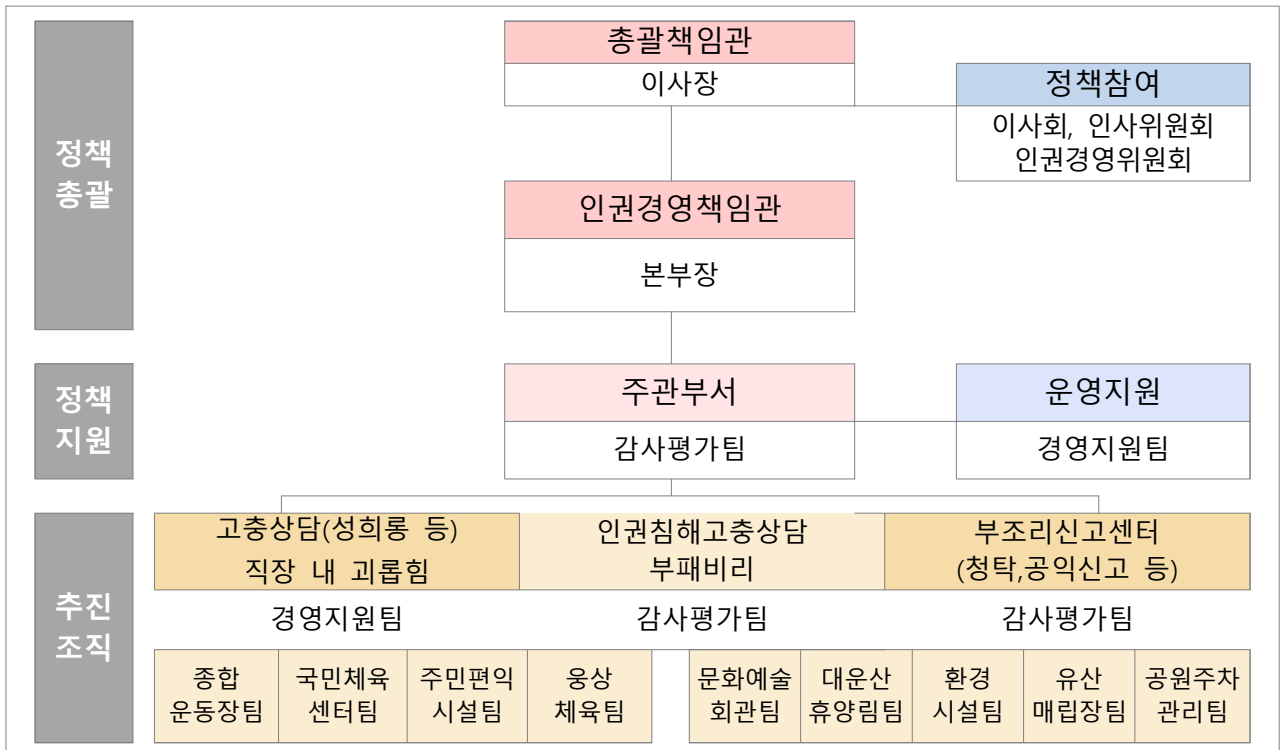
#### □ 인권경영 추진목표 및 전략

|             |   |   |   |   |
|-------------|---|---|---|---|
| <b>비전</b>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기업의 인권경영 실천  |   |   |   |
| <b>목표</b>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건강한 사회 실현  |   |   |   |
| <b>핵심목표</b> |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 인권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인권의식 정착 문화 확산   | 내부통제 및 공직기강 확립  |
| <b>전략과제</b>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권경영 추진 체계 구축 및 운영</li> <li>2. 반부패 인프라 구축 운영</li> <li>3. 청렴인권 게시판 신설운영</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개선 발굴처리</li> <li>2. 자율적 제도개선 내실화 및 정보공개</li> <li>3. 인권경영인증시스템 취득을 통한 투명경영 이미지제고</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맞춤형 인권교육 및 직원인권의식 내재화</li> <li>2. 인권실천 생활화</li> <li>3. 인권경영을 위한 고충처리방 및 인권경영위원회 운영</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명경영을 위한 예방 중심 감사,감찰 강화</li> <li>2. CEO 청렴소통 핫라인 운영</li> <li>3.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실시</li> <li>4. 부당계약 자가 진단</li> </ol> |

## □ 인권경영 단계별 추진 및 주요활동

| 1단계<br>인권경영체계 구축  | 2단계<br>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 3단계<br>인권경영 실행, 공개        | 4단계<br>구제절차의 제공  |
|---|--|--|---------------------------|--|
| 1.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br>2.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br>3.기관내 각 부서 확산<br>4.기관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 | <b>2-1단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b><br>1.기관운영 인권 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br>2.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br>3.인권경영위원회 평가자료 제출<br>4.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br>5.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 | <b>2-2단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b><br>1.주요사업 인권 영향평가 실시 계획수립<br>2.주요사업 인권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마련<br>3.주요사업 인권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교육<br>4.인권경영위원회 평가자료 제출<br>5.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br>6.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 | 1.인권경영 실행<br>2.인권경영전과정 공개 | 1.구제절차 연구와 준비<br>2.구제절차 수립<br>3.구제절차 시행<br>4.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교육, 홍보, 평가 및 개선 |

## □ 인권경영 추진조직



○ 전담부서 :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시행, 구제절차 점검·평가·교육 개선

○ 사업부서 : 인권경영 회의 참여,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인권프로그램 운영

## □ 인권경영위원회 조직 및 구성

| 구분   | 성명  | 직급             | 구성기준   | 비고    |
|------|-----|----------------|--------|-------|
| 내부위원 | 장0우 | 본부장            | 당연직    | 위원장   |
|      | 임0혁 | 감사평가팀장         | 당연직    | 총괄부서  |
|      | 황0욱 | 근로자대표          | 당연직    | 노사협의회 |
| 외부위원 | 이0희 | 양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 장애인전문가 | -     |
|      | 남0봉 | 양산뉴스파크대표       | 지역주민대표 | -     |
|      | 김0자 | 양산시사회복지관 관장    | 복지전문가  | -     |
|      | 박0정 | 자문노무사          | 노무전문가  | -     |
| 간 사  | 유0훈 | 감사평가팀 차장       | 인권경영담당 | -     |

### ○ 역할

- 공단 인권경영 사업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반영
-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 권고 등

## □ 2021년 인권경영위원회 활동

### ○ 2021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개최일자 : 2021. 7. 26.(월)
- 참여위원 : 이사장 외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주요안건과 실적

| 주요안건             | 주요 의결사항  |
|------------------|--|
| 2021년<br>인권경영 계획 | - 인권경영 이행계획, 구제절차 지침 승인<br>-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세부지표 원안가결<br>- 갑질근절, 불공정계약실태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실시 |

### ○ 2021년 제2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개최일자 : 2021. 10. 6.(수)
- 참여위원 : 이사장 외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주요안건과 실적

| 주요안건              | 주요 의결사항   |
|-------------------|---|
| 2021년<br>인권영향평가 등 | -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기관운영, 주요사업) 확정 승인<br>-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평가 및 홍보<br>-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계약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

### 3. 2021년 인권경영 추진현황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 2021. 6. 16.            | 인권경영위원회 위촉<br>(내부위원3명, 외부위원4명)               | 2명 연임, 2명 신규                          |
| 2021. 7. 26.            |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실시                                | 인권경영 이행지침<br>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br>인권구제절차 개선 |
| 2021. 8.                | 인권영향평가 감사평가팀 구성                              | 담당자 회의                                |
|                         | 사업팀별 인권경영담당자 지정 및<br>회의 실시                   | 사업팀 인권영향평가<br>세부지표 확정                 |
|                         | 인권영향평가 지표 설정                                 | 사전 현장점검평가                             |
| 2021. 9. 6.<br>~ 9. 17. | 인권영향평가 실시<br>1차 평가(사전평가, 서면, 현장조사<br>및 인터뷰)  | 감사평가팀 사전평가<br>&<br>담당위원 현장평가 실시       |
| 2021. 10. 05.           | 찾아가는 도민인권학교 전문교육                             | 이사장 외 임직원                             |
| 2021. 10. 06.           |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실시<br>2차 평가(총괄평가)<br>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 | 평가자:인권경영위원 7명<br>전체위원 2차 평가 실시        |
| 2021. 10. 30.           | 인권영향평가 결과 환류체계 설정                            |                                       |
| 2021.<br>11월~12월중       | 인권영향평가보고서 공개                                 | 내외부 및 타공단                             |
| 2022. 1월중               | 인권경영보고서 공개                                   | 내외부 및 타공단                             |

### Ⅲ 인권영향평가 실시

#### 1. 인권영향평가 개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 [붙임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구분       | 주요내용  | 시기              |
|----------|---|-----------------|
| 계 획 수 립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세부지표 의견수렴  | 2021.<br>7.~8.  |
| 직 원 교 육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실시  |                 |
| 평가 자료 제출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각 세부 평가 자료 제출<br>- 각 부서 → 인권경영 담당부서(감사평가팀)                             |                 |
| 평 가 실 시  | 인권경영위원회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br>- 체크리스트 평가, 이해관계자 의견,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에 대한 방지 조치 포함 | 2021.<br>9.~11. |
|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최고경영진 보고, 인권침해 방지 조치 수립·시행,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 [붙임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구분       | 주요내용  | 시기              |
|----------|---|-----------------|
| 계 획 수 립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br>- 주요사업 선정, 평가 목적·원칙·주체·기간·소요예산 등 포함                         | 2021.<br>7.~8.  |
| 지 표 마 련  | 주요 사업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 분석,<br>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                 |
| 직 원 교 육  | 주요사업 추진부서 직원 대상 체크리스트 교육  |                 |
| 평가 자료 제출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각 세부 평가 자료 제출<br>- 주요사업 추진부서 → 인권경영 담당부서(감사평가팀)                        | 2021.<br>9.~11. |
| 평 가 실 시  | 인권경영위원회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br>- 체크리스트 평가, 이해관계자 의견,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에 대한 방지 조치 포함 |                 |
|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최고경영진 보고, 인권침해 방지 조치 수립·시행,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                 |



가. 평가항목의 이원화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공단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평가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공단의 사업수행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평가

나. 평가방법과 기준

- 평가기간 : 2021. 9. 6. ~ 9. 17.
- 평가대상 : 공단 경영활동 전반 및 주요사업
  - 기관운영 평가 : 공단 경영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분야 평가
  - 주요사업 평가 : 공단 체육시설사업부, 문화환경사업부 산하 팀별 인권침해 예방이 요구되는 분야 평가

|      |                                      |
|------|--------------------------------------|
| 체육시설 |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주민편익시설, 웅상문화체육센터     |
| 문화환경 | ·문화예술회관, 대운산휴양림, 환경시설, 유산매립장, 공원주차관리 |

- 평가방향
  - 자체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관대화 경향을 개선하고 공정성·객관성·전문성·투명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적 시각에 입각하여 평가 추진
  - 인권경영 담당부서 사전평가(1차)와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의 평가(2차 평가)를 취합하여 적용
  - 평가과정 중 직원들에게 교육 기회(설명회, 토론회 등)을 제공하여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및 추진동력 확보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 서면평가 활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통한 비접촉 평가 진행
  - 감사평가팀 자체평가(1차), 인권경영위원(7명)의 현장평가, 인터뷰 등(2차)
- 평가내용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1개 분야 160개 지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2개 사업 5개 분야 48개 지표

다. 세부계획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영향평가

- 평가대상 : 공단 경영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범위
- 평가주체 및 역할
  - (감사평가팀) 인권영향평가 지표, 사전평가, 체크리스트 관리 및 결과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인권영향평가 전문가 자문, 2차 평가 등
- 평가내용
  - 기관운영 11개 분야(인권경영 체계,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협력업체, 현지주민, 환경권, 고객인권, 직장 내 인권) 160개 지표
  - 주요사업 2개사업부 5개 분야(공정운영,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보장, 안전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보장) 48개 지표
- 평가방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지표를 바탕으로 공단에 맞는 체크리스트 도출
  - (1차 평가) 인권영향평가(감사평가팀)을 통한 내부 자체평가 실시
  - (2차 평가) 1차 평가 결과와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의 현장평가, 인터뷰 등을 공유하여 최종평가 확정(9. 6. ~ 9. 17.)
-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평가

○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체계

- 평가점수 체계

| 구분 | 예  | 보완필요 | 아니오 | 정보없음 | 해당없음 |
|----|----|------|-----|------|------|
| 점수 | 2점 | 1점   | 0점  | 평가제외 | 평가제외 |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정보없음, 해당없음)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

- 평가등급 체계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
| 평점 | 100점<br>~<br>90점 | 89점<br>~<br>80점 | 79점<br>~<br>70점 | 69점<br>~<br>60점 | 59점<br>~<br>50점 | 49점<br>~<br>40점 | 39점<br>~<br>30점 | 29점<br>~<br>20점 | 19점<br>~<br>0점 |

## 2. 인권영향평가 방법

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지표 : 11개 분야, 160개 지표

| 연번 | 분야              | 연번 | 분야           |
|----|-----------------|----|--------------|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6  | 산업안전 보장      |
| 2  | 고용상의 비차별        | 7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8  |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
| 4  | 강제노동의 금지        | 9  | 환경권 보장       |
| 5  | 아동노동의 금지        | 10 | 고객 인권보호      |
| -  | -               | 11 | 직장 내 인권보호    |

○ 평가단 구성 : 평가지표별 위원과 주관부서 지정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위원 | 소속   | 주관부서  |
|----|-----------------|------|------|-------|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장0우  | 내부위원 | 감사평가팀 |
|    |                 | 김0자  | 외부위원 |       |
| 2  | 고용상의 비차별        | 임0혁  | 내부위원 | 감사평가팀 |
|    |                 | 남0봉  | 외부위원 |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황0욱  | 내부위원 | 경영지원팀 |
|    |                 | 박0정  | 외부위원 |       |
| 4  | 강제노동의 금지        | 장0우  | 내부위원 | 감사평가팀 |
|    |                 | 이0희  | 외부위원 |       |
| 5  | 아동노동의 금지        | 임0혁  | 내부위원 | 감사평가팀 |
|    |                 | 남0봉  | 외부위원 |       |
| 6  | 산업안전보장          | 황0욱  | 내부위원 | 경영지원팀 |
|    |                 | 이0희  | 외부위원 |       |
| 7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장0우  | 내부위원 | 경영지원팀 |
| 8  |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 김0자  | 외부위원 | 감사평가팀 |
| 9  | 환경권 보장          | 황0욱  | 내부위원 | 경영지원팀 |
| 10 | 고객 인권보호         | 임0혁  | 내부위원 | 감사평가팀 |
| 11 | 직장 내 인권보호       | 박0정  | 외부위원 | 감사평가팀 |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지표 : 2개 사업부 5개 분야 48개 지표

| 평가대상 사업  | 연번 | 평가 분야          |
|--|----|----------------|
| <b>체육시설사업부</b><br>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br>주민편익시설, 웅상문화체육센터                     | 1  | 공정운영           |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
| <b>문화환경사업부</b><br>문화예술회관(쌍벽루아트홀),<br>대운산휴양림(숲애서), 환경시설,<br>유산매립장, 공원주차관리 | 3  | 안전보장           |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 평가단 구성 : 평가지표별 위원과 주관부서 지정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위원 | 소속   | 주관부서  |
|----|----------------|------|------|-------|
| 1  | 공정운영           | 장0우  | 내부위원 | 감사평가팀 |
|    |                | 김0자  | 외부위원 |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 임0혁  | 내부위원 | 감사평가팀 |
|    |                | 이0희  | 외부위원 |       |
| 3  | 안전보장           | 황0욱  | 내부위원 | 경영지원팀 |
|    |                | 남0봉  | 외부위원 |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황0욱  | 내부위원 | 감사평가팀 |
|    |                | 박0정  | 외부위원 |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임0혁  | 내부위원 | 경영지원팀 |
|    |                | 김0자  | 외부위원 |       |

### 3. 인권영향평가 종합

#### 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

| 연번 | 평가지표                   |     | 세부지표                 | 점수   |      |
|----|------------------------|-----|----------------------|------|------|
|    |                        |     |                      | 지표점수 | 합계   |
| -  | -                      |     | -                    | 지표점수 | 합계   |
|    | 종합점수                   |     |                      |      | 97.0 |
| 1  | 인권경영<br>체제의<br>구축      | 계   |                      |      | 94.6 |
|    |                        | 분야1 | 인권존중 정책선언            | 91.6 |      |
|    |                        | 분야2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91.6 |      |
|    |                        | 분야3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br>필요조치 | 90   |      |
|    |                        | 분야4 | 인권경영 성과              | 100  |      |
|    |                        | 분야5 | 구제절차 마련              | 100  |      |
| 2  | 고용상의<br>비차별            | 계   |                      |      | 100  |
|    |                        | 분야1 | 고용상 비차별              | 100  |      |
|    |                        | 분야2 | 고용상 남녀비차별            | 100  |      |
|    |                        | 분야3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100  |      |
| 3  | 결사 및<br>단체교섭의<br>자유 보장 | 계   |                      |      | 100  |
|    |                        | 분야1 |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 100  |      |
|    |                        | 분야2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100  |      |
|    |                        | 분야3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100  |      |
| 4  | 강제노동의<br>금지            | 계   |                      |      | 100  |
|    |                        | 분야1 | 강제노동 금지              | 100  |      |
|    |                        | 분야2 |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 해당없음 |      |
| 5  | 아동노동의<br>금지            | 계   |                      |      | 100  |
|    |                        | 분야1 | 연소자 고용 금지            | 100  |      |
|    |                        | 분야2 |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 해당없음 |      |

|    |                |     |                     |      |      |
|----|----------------|-----|---------------------|------|------|
| 6  | 산업안전<br>보장     | 계   |                     |      | 96.8 |
|    |                | 분야1 | 작업장 안전              | 100  |      |
|    |                | 분야2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87.5 |      |
|    |                | 분야3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 100  |      |
|    |                | 분야4 |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 100  |      |
| 7  | 책임있는<br>공급망 관리 | 계   |                     |      | 87.5 |
|    |                | 분야1 | 협력회사등의 인권침해 예방      | 100  |      |
|    |                | 분야2 | 모니터링 실시             | 75   |      |
|    |                | 분야3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87.5 |      |
| 8  | 현지주민의<br>인권보호  | 계   |                     |      | 100  |
|    |                | 분야1 | 지역주민 인권항목의 존중·보호    | 100  |      |
|    |                | 분야2 |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 해당없음 |      |
| 9  | 환경권 보장         | 계   |                     |      | 88.3 |
|    |                | 분야1 | 환경경영체제 수립유지         | 90   |      |
|    |                | 분야2 | 환경정보의 공개            | 83.3 |      |
|    |                | 분야3 | 환경문제에 예방적 접근의 원칙    | 100  |      |
|    |                | 분야4 | 비상계획 수립             | 80   |      |
| 10 | 고객<br>인권보호     | 계   |                     |      | 100  |
|    |                | 분야1 |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 100  |      |
|    |                | 분야2 | 고객 사생활 보호           | 100  |      |
| 11 | 직장 내<br>인권보호   | 계   |                     |      | 100  |
|    |                | 분야1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 100  |      |
|    |                | 분야2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 100  |      |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

| 평가대상    | 평가지표 |                | 점수   |      |
|---------|------|----------------|------|------|
|         |      |                | 지표점수 | 합계   |
|         | 종합점수 |                |      | 96   |
| 체육시설사업부 | 계    |                |      | 97.3 |
|         | 분야1  | 공정운영           | 100  |      |
|         | 분야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91.3 |      |
|         | 분야3  | 안전보장           | 100  |      |
|         | 분야4  | 근무자 인권보호       | 95   |      |
|         | 분야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
| 문화환경사업부 | 계    |                |      | 94.7 |
|         | 분야1  | 공정운영           | 100  |      |
|         | 분야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85   |      |
|         | 분야3  | 안전보장           | 96   |      |
|         | 분야4  | 근무자 인권보호       | 92.5 |      |
|         | 분야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

## V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분석

### 1. 인권영향평가 종합 현황

가. 평가 요약표

| 구 분       | 점 수 | 등 급 | 비 고                        |
|-----------|-----|-----|----------------------------|
| 기관운영 영향평가 | 97  | 1등급 |                            |
| 주요사업 영향평가 | 96  | 1등급 | · 체육시설 97.3<br>· 문화환경 94.7 |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종합 권고의견

| 【결과 그래프】 |  | 【점수표】 |                 |      |
|----------|--|-------|-----------------|------|
|          |  | 평가지표  | 점수              |      |
|          |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94.6 |
|          |  | 2     | 고용상의 비차별        | 100  |
|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100  |
|          |  | 4     | 강제노동의 금지        | 100  |
|          |  | 5     | 아동노동의 금지        | 100  |
|          |  | 6     | 산업안전보장          | 96.8 |
|          |  | 7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87.5 |
|          |  | 8     |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100  |
|          |  | 9     | 환경권 보장          | 88.3 |
|          |  | 10    | 고객인권 보호         | 100  |
|          |  | 11    | 직장 내 인권보호       | 100  |
|          |  | 평균    | 97.0            |      |

○ 종합의견

-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97.0점**으로 9등급 중 **1등급**으로 나타남
- 평가 지표별·항목별 평가결과에서 고용상의 비차별과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운영·각종 위원회 참여로 근로자의 경영활동이 보장되고, 임직원의 노사상생워크숍 실시,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활동, 노측 단체교섭 및 노동권 보장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및 환경권 보장 관련된 항목 평가점수 90 점 미만을 받아 공단의 **개선 노력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또한, 협력업체 및 업체 계약 시 인권보호, 존중 및 안전관리 이행사항에 관한 평가항목을 개선 보완하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함으로써 업무영역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경영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행 독려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단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에 있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방안(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지침 등 제도 개선 및 구축 등)을 체계화하고 강화하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및 문화확산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직장 내 인권보호 등 직원의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제반 사항(규정, 지침, 운영계획, 고충처리, 전문교육 등)을 체계화하고 **직원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시행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공단의 종합평점보다 낮은 수준의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지역주민, 협력업체 등)의 자문 등을 수렴·반영하고 향후 평가에 참여시켜 **공단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기관(공단)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 등의 보완·개선 및 강화 등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함**

○ 주요 지표별 권고의견

-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합계   |
|-----|-------------------|------|------|------|
| 1   | 인권존중 정책 선언        | 91.6 | 91.6 | 91   |
| 2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91.6 | 91.6 | 91   |
| 3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90   | 90   | 90   |
| 4   | 인권경영 성과           | 100  | 100  | 100  |
| 5   | 구제절차 마련           | 100  | 100  | 100  |
| 합 계 |                   | 94.6 | 94.6 | 94.6 |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은 94.6점으로 1등급이며, 대부분의 평가 지표를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높게 평가됨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규정 보완 권고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보완 권고
- 구제절차 마련은 공단의 활동을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직원 및 피해자 등에 대해 접근과 이용이 쉽고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보완 개선하여 체계화 필요

**【잘된 점】**

- 인권경영 이행지침과 인권경영 이행계획이 공단의 인권경영 추진에 있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침해 구제절차지침 제정, 인권경영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문화 개선의 책무를 다하고 있음

**【개선할 점】**

-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인권경영 내용 및 평가결과를 전 직원과 이해관계자까지 전달될 수 있는 체계와 관리감독, 인권정책선언 검토 필요

2) 고용상의 비차별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합계  |
|-----|--------------|------|------|-----|
| 1   | 고용상 비차별      | 100  | 100  | 100 |
| 2   | 고용상 남녀비차별    | 100  | 100  | 100 |
| 3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100  | 100  | 100 |
| 합 계 |              | 100  | 100  | 100 |

- 고용상의 비차별은 100점으로 1등급이며, 대부분에서 관련 규정 및 법령 등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됨

- 고용상 비차별과 고용상 남녀 비차별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운영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단 내 해당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평가점수를 받음

**【잘된 점】**

- 공단 임직원행동강령 규정, 취업규정, 인사규정, 복리후생규정, 회계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침해 구제절차지침,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지침 등에 명시되어 잘 관리되고 있음.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합계  |
|----|-------------------|------|------|-----|
| 1  |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 100  | 100  | 100 |
| 2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100  | 100  | 100 |
| 3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100  | 100  | 100 |
| 합계 |                   | 100  | 100  | 100 |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은 **100점으로 1등급**이며,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에 상호 존중 속 적극 시행 중에 있음

**【잘된 점】**

- 공단은 근로자의 노측협의회, 노동조합을 통해 노조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을 통해 공단 경영활동 참여와 의견수렴이 잘 되고 있으며, 정기·비정기적 사전 협의 및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노측협의회, 노동조합을 위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회의실, 자료, 기타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4) 강제노동의 금지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비고   |
|----|-----------------|------|------|------|
| 1  | 강제노동 금지         | 100  | 100  | 100  |
| 2  |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예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합계 |                 | 100  | 100  | 100  |

- 강제노동의 금지는 **100점으로 1등급**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들에게 의무적 초과노동 및 강제노동을 실시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은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

**【잘된 점】**

· 근로자의 노동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인권경영 이행지침,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무시간 및 고용계약, 강제노동 금지에 대해 명기하고 관리되고 있음

5) 아동노동의 금지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비고   |
|----|---------------------|------|------|------|
| 1  | 연소자 고용 금지           | 100  | 100  | 100  |
| 2  |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합계 |                     | 100  | 100  | 100  |

- 아동노동의 금지는 **100점으로 1등급**이며, '근로기준법' 준수 및 공단 인사규정을 통해 채용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연소자 고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
-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

**【잘된 점】**

· 아동노동 금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 통해 채용연령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음

## 6) 산업안전 보장

###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합계   |
|----|------------------|------|------|------|
| 1  | 작업장 안전           | 100  | 100  | 100  |
| 2  | 임산부 및 장애인등 보호    | 87.5 | 87.5 | 87.5 |
| 3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 100  | 100  | 100  |
| 4  |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 100  | 100  | 100  |
| 합계 |                  | 96.8 | 96.8 | 96.8 |

- 산업안전 보장은 **96.8점으로 1등급**이며, 산업재해 및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유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시설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분기별 산업보건위원회 운영과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건강검진 실시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문가가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한 건강검진 종합검사 실시로 직원 건강관리 도모 및 만족도 향상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획득**으로 사업장내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재해 사고 예방을 통한 재산과 인명보호, 산업재해 감소를 통한 공단이미지 및 대외 인지도 상승 도모

#### 【잘된 점】

- 공단은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통해 월 1회의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관리자를 통해 매월 건강검진 사후관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운영·관리 시설물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시설물 점검계획을 통해 위험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음
-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직원 건강관리 도모 및 만족도 향상
- 공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획득으로 안전관리 체계화, 사고예방 공단 이미지 및 대외 인지도 상승

#### 【개선할 점】

- 다중 이용시설물에 사회적 약자(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배려를 위한 안전장치 보완 및 설치 운영과 세심하고 꼼꼼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합계   |
|-----|---------------------|------|------|------|
| 1   | 협력회사등의 인권침해 예방      | 100  | 100  | 100  |
| 2   | 모니터링 실시             | 75   | 75   | 75   |
| 3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87.5 | 87.5 | 87.5 |
| 합 계 |                     | 87.5 | 87.5 | 87.5 |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는 **87.5점으로 2등급**이며, 내부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해 협력회사 선정 시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선정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 공단은 이해관계자(협력업체, 임대계약 등) 계약 체결 시 업무 영역에서 인권 존중 내용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
- 협력회사의 인권 보호 준수 여부 모니터링 권고

**【잘된 점】**

- 공단은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따라 협력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하고 있음
- 인권보호이행 서약서 협력업체 징수

**【개선할 점】**

- 협력회사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평가에 반영 및 인권보호 준수 여부 모니터링 권고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합계   |
|-----|------------------|------|------|------|
| 1   | 지역주민 인권항목의 존중·보호 | 100  | 100  | 100  |
| 2   |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합 계 |                  | 100  | 100  | 100  |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는 공공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관련 법령에서 회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지표가 해당되어 **100점으로 1등급**이며, 주민참여예산제, 고객모니터단 위촉 및 간담회 실시, 카카오톡채널, 온라인 밴드를 통한 홍보 등 지역주민 인권항목의 존중·보호에 적극 노력 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특허 출원 시 선행기술조사 등을 실시하고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은 해당 업체와 계약 시 보상에 대해 충분히 심사 및 협의 후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개선할 점】**

- 공단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 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과 대책 마련 필요

9) 환경권 보장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합계   |
|-----|------------------|------|------|------|
| 1   | 환경경영체제 수립유지      | 90   | 90   | 90   |
| 2   | 환경정보의 공개         | 83.3 | 83.3 | 83.3 |
| 3   | 환경문제에 예방적 접근의 원칙 | 100  | 100  | 100  |
| 4   | 비상계획 수립          | 80   | 80   | 80   |
| 합 계 |                  | 88.3 | 88.3 | 88.3 |

- **환경권 보장**은 **88.3점으로 2등급**에 해당되며, 환경경영체제 수립유지, 환경정보의 공개 지표 지속 이행중이며,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지표는 공단의 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환경 책임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표 보완 및 개선 필요**

**【잘된 점】**

- 공단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 계획 및 친환경 녹색경영 종합 계획, 재난안전 관리 종합계획 수립-운영을 통해 환경경영과 재난에 대한 대비책 준수 및 관리되고 있음
- 다중 이용시설인 국민체육센터, 주민편익시설, 응상문화체육센터는 체육시설 안전 경영 인증(KSPO45001) 인증 및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인증 획득 등 안전한 환경제공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수영장에 대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게시하여 이용고객들의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노력함

**【개선할 점】**

- 공단은 환경관련 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협의-검토를 통해 지표 보완 및 개선 관리 필요

10) 고객 인권보호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합계  |
|-----|-----------------|------|------|-----|
| 1   |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 100  | 100  | 100 |
| 2   | 고객 사생활 보호       | 100  | 100  | 100 |
| 합 계 |                 | 100  | 100  | 100 |

- 고객 인권보호는 100점으로 1등급이며, 고객모니터단 운영, 고객 간담회, 카카오톡채널, 고객의 소리, 체육센터 밴드, 고객응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직원 친절교육, 친절직원 선정, 고객서비스 이행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고객 사생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교육계획 수립 및 분기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전체 교육, 사업팀별 교육 등을 통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며 노력하고 있음

**【잘된 점】**

-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용고객의 사생활 보호,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서비스 이행 실태 점검 등 다양한 노력과 관리가 되고 있음
- 공단 시설,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제공 및 알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의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 및 정기적 전수조사 실시하고 있음

### 11) 직장 내 인권보호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합계  |
|----|------------------|------|------|-----|
| 1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 100  | 100  | 100 |
| 2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 100  | 100  | 100 |
| 합계 |                  | 100  | 100  | 100 |

- 직장 내 인권보호는 **100점으로 1등급**이며,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지침,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전문기관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침해 구제절차지침, 4대 폭력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고충상담위원, 고충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고충상담실 운영, CEO 청렴소통 핫라인 운영, 분기별 청렴교육, 전문강사 인권교육, 윤리헌장 선포식, 갑질근절 간담회, 청렴다짐, 갑질근절 서약식, 성희롱성폭력예방 캠페인 및 서약식, 감정근로자 건강보호 치유프로그램 시행, 노사상생워크숍 등을 통해 **직장 내 인권보호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 하고 있음**

#### 【잘된 점】

· 공단은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지침,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인권경영 이행지침, 4대 폭력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고충상담위원, 고충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고충상담실 운영, CEO 청렴소통 핫라인 운영, 분기별 청렴교육, 갑질근절 예방교육 갑질근절 간담회, 청렴, 인권 서약식, 감정근로자 건강보호 치유프로그램 시행, 노사상생워크숍 등을 통해 직장 내 인권보호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 종합 권고의견

| 【체육시설 : 결과 그래프】   |                | 【체육시설 : 점수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평가지표</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공정운영</td> <td>100</td> </tr> <tr> <td>2</td> <td>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td> <td>91.3</td> </tr> <tr> <td>3</td> <td>안전보장</td> <td>100</td> </tr> <tr> <td>4</td> <td>근무자 인권보호</td> <td>95</td> </tr> <tr> <td>5</td> <td>지역주민 환경보장</td> <td>100</td> </tr> <tr> <td colspan="2">평 균</td> <td>97.3</td> </tr> </tbody> </table> |  |  | 평가지표 | 점수 | 1 | 공정운영 | 100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91.3 | 3 | 안전보장 | 100 | 4 | 근무자 인권보호 | 95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평 균 |  | 97.3 |
|                   | 평가지표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1                 | 공정운영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91.3   |  |  |      |    |   |      |     |   |                |      |   |      |     |   |          |      |   |           |     |     |  |      |
| 3                 | 안전보장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95   |  |  |      |    |   |      |     |   |                |      |   |      |     |   |          |      |   |           |     |     |  |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평 균               |                | 97.3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환경시설 : 결과 그래프】 |                | 【문화환경시설 : 점수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평가지표</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공정운영</td> <td>100</td> </tr> <tr> <td>2</td> <td>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td> <td>85</td> </tr> <tr> <td>3</td> <td>안전보장</td> <td>96</td> </tr> <tr> <td>4</td> <td>근무자 인권보호</td> <td>92.5</td> </tr> <tr> <td>5</td> <td>지역주민 환경보장</td> <td>100</td> </tr> <tr> <td colspan="2">평 균</td> <td>94.7</td> </tr> </tbody> </table>  |  |  | 평가지표 | 점수 | 1 | 공정운영 | 100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85   | 3 | 안전보장 | 96  | 4 | 근무자 인권보호 | 92.5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평 균 |  | 94.7 |
|                   | 평가지표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1                 | 공정운영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85   |  |  |      |    |   |      |     |   |                |      |   |      |     |   |          |      |   |           |     |     |  |      |
| 3                 | 안전보장           | 96   |  |  |      |    |   |      |     |   |                |      |   |      |     |   |          |      |   |           |     |     |  |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92.5   |  |  |      |    |   |      |     |   |                |      |   |      |     |   |          |      |   |           |     |     |  |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평 균               |                | 94.7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공단의 주요사업 체육시설사업부, 문화환경사업부 중 각 사업팀 별 다수의 이용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운영에서 파생되는 인권영향평가 결과 **체육시설**(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주민편익시설, 웅상문화체육센터) **97.3점**, **문화환경시설**(문화예술회관, 대운산휴양림, 환경시설, 유산매립장, 공원주차관리) **96점**으로 두 시설의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1등급**으로 나타남

- **체육시설**의 경우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분야**가 **87.5점**으로 타 분야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종합운동장은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양산경찰서), 국민체육센터, 주민편의시설, 웅상문화체육센터는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KSPO 45001/국민체육진흥공단)**,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인증 (대한생존수영협회)**, **범죄 예방 최우수시설(양산경찰서) 등 인증**, 수영장 및 헬스장 안전요원 배치, 고객 대상 응급처치(CPR 등)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고객들의 안전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점에 매우 높게 평가되며, 전문강사 인권교육, 자체 인권교육 실시, 사이버교육 수료, 고충상담실 운영, 고충상담위원 상담, 찾아가는 고충상담, CEO 청렴소통 핫라인, 갑질근절 서약, 감정근로자 건강보호 치유프로그램, 노사워크숍 등을 통해 **근무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점수가 반영됨**
-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주민편의시설, 웅상문화체육센터는 양산경찰서 및 현장시민이 함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촬영 방지, 홍보 및 경각심 고취 등 이용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안전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고객간담회, 카카오톡 채널, 온라인밴드 등 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문화예술회관, 대운산휴양림, 환경시설, 유산매립장, 공원주차관리 평가 결과 '개인정보보호 수시점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의 방지대책 및 매뉴얼의 내용을 현행화하고 해당 시설에 비치 및 교육하여 이용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운영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됨
- 대운산휴양림 위급상황 신고를 위한 안심벨 설치, 공원주차관리 주차 스톱퍼, 과속방지턱 등 설치하여 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양산경찰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캠핑장 화재경보기대여 등 이용고객 안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됨

○ 주요 지표별 권고의견

1) 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비고  |
|-----|----------------|------|------|-----|
| 1   | 공정운영           | 100  | 100  | 100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90   | 80   | 85  |
| 3   | 안전보장           | 100  | 100  | 100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100  | 90   | 95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100  | 100 |
| 합 계 |                | 98   | 94   | 96  |

- 주요사업 중 **종합운동장**은 **96점**으로 **1등급**이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평가 점수를 받음**
- 공정운영은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침해 관련 조항을 고객센터현장에 명시·운영하며 ‘건의함’ 및 고객의 소리, 고객간담회 실시, 카카오톡채널, 시민참여제안제도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비치, 외부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 이용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용이성을 위해 장애인주차장, 점자블록, 승강기 운영, 수유실, 장애인 리프트 등 설치되어 있으나 자체 휠체어 구비,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이용객을 위한 외국어 안내문, 리플릿 등 설치 권고
- 안전보장은 운동장 내 안전요원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및 이용고객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위급상황 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구급함과 제세동기가 배치되어 있고, 난간 등 안전바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적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및 난간 설치, 시설물 정기적인 점검, 수시 방역 실시 등의 안전조치가 매우 잘 운영·관리되고 있음

- 근무자 인권보호는 각종 안전장구(마스크, 헬멧 등) 지급, 고충상담 창구운영, 고충상담 위원 면담, 찾아가는 고충상담, 익명 온라인 성폭력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내부청렴도 조사, 산업 안전보건 및 폭력예방 교육 등 실시,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참여, 근무자 휴게시설 설치 등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으나 자체 감정노동자 프로그램을 운영 권고
- 지역주민 환경보장은 친환경 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 에너지 절감, 시설물 유지보수, 조정,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수시 방역, 전기충전기 설치, 가스사고 보험가입 등 지역주민 환경보장에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  |  |  |  |
|---|--|--|--|--|
| <b>【잘된 점】</b>   |  |  |  |  |
| ·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보호 및 소통, 경영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고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외 공인인증, 선제적 시설점검 및 개선 노력은 매우 잘되고 있음                        |  |  |  |  |
| ·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구 지급, 다양한 고충상담 장치 운영, 안전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  |  |  |  |
| <b>【개선할 점】</b>  |  |  |  |  |
| · 자체 감정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  |  |  |
| · 사회적 약자의 시설 이용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자체 휠체어 구비, 외국인을 위한 리플릿, 사인물 설치 등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편의제공 시설 등의 개선과 확대 노력이 필요함 |  |  |  |  |

## 2) 체육사업부(국민체육센터)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비고  |
|-----|----------------|------|------|-----|
| 1   | 공정운영           | 100  | 100  | 100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90   | 90   | 90  |
| 3   | 안전보장           | 100  | 100  | 100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100  | 90   | 95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100  | 100 |
| 합 계 |                | 98   | 96   | 97  |

- 주요사업 중 **국민체육센터**는 **97점**으로 **1등급**이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평가 점수를 받음**
- 공정운영은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침해 관련 조항을 고객센터현장에 명시·운영하며 ‘건의함’ 및 고객의 소리, 고객간담회 실시, 자체 밴드, 카카오톡채널, 시민참여제안제도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비치, 외부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 이용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용이성을 위해 장애인주차장, 점자블록, 승강기 운영, 수유실, 장애인 리프트, 자체 휠체어 구비 등 설치되어 있으나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 이용객을 위한 외국어 안내문, 리플릿 등 설치 권고
- 안전보장은 운동장 내 안전요원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및 이용고객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위급상황 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구급함과 제세동기가 배치되어 있고, 난간 등 안전바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적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및 난간 설치, 시설물 정기적인 점검, 수시 방역 실시 등의 안전조치가 매우 잘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O 45001) 중**
- 근무자 인권보호는 각종 안전장구(마스크, 헬멧 등) 지급, 고충상담 창구운영, 고충상담 위원 면담, 찾아가는 고충상담, 익명 온라인 성폭력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내부청렴도 조사, 산업안전보건 및 폭력예방 교육,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참여 등 실시, 근무자 휴게시설 설치 등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으나 자체 감정노동 프로그램 운영 권고
- 지역주민 환경보장은 친환경 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 에너지 절감, 시설물 유지보수, 조경,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수시 방역, 전기충전기 설치, 가스사고 보험가입 등 지역주민 환경보장에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잘된 점】**

-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보호 및 소통, 경영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고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외 공인인증(체육시설 안전경영, 생존수영교육 등), 선제적 시설점검 및 개선 노력은 매우 잘되고 있음
-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구 지급, 다양한 고충상담 장치 운영, 안전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개선할 점】**

- 자체 감정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사회적 약자의 시설 이용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위한 리플릿, 사인물 설치 등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편의제공 시설 등의 개선과 확대 노력이 필요함

3) 체육사업부(주민편의시설)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비고  |
|-----|----------------|------|------|-----|
| 1   | 공정운영           | 100  | 100  | 100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90   | 90   | 90  |
| 3   | 안전보장           | 100  | 100  | 100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100  | 100  | 100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100  | 100 |
| 합 계 |                | 98   | 98   | 98  |

- 주요사업 중 **주민편의시설**은 **98점**으로 **1등급**이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평가 점수를 받음**
- 공정운영은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침해 관련 조항을 고객서비스현장에 명시·운영하며 ‘건의함’ 및 고객의 소리, 고객간담회 실시, 자체 밴드, 카카오톡채널, 시민참여제안제도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비치, 외부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 이용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용이성을 위해 장애인주차장, 점자블록, 승강기 운영, 수유실, 장애인 리프트, 자체 휠체어 구비 등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이용객을 위한 외국어 안내문, 리플릿 등 설치 권고
- 안전보장은 운동장 내 안전요원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및 이용고객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위급상황 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구급함과 제세동기가 배치되어 있고, 난간 등 안전바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적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및 난간 설치, 시설물 정기적인 점검, 수시 방역 실시 등의 안전조치가 매우 잘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O 45001) 획득**
- 근무자 인권보호는 각종 안전장구(마스크, 헬멧 등) 지급, 고충상담 창구운영, 고충상담 위원 면담, 찾아가는 고충상담, 익명 온라인 성폭력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내부청렴도 조사, 산업안전보건 및 폭력예방 교육,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참여, 자체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실시, 근무자 휴게시설 설치 등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지역주민 환경보장은 친환경 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 에너지 절감, 시설물 유지보수, 조정,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수시 방역, 전기충전기 설치, 가스사고 보험가입 등 지역주민 환경보장에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잘된 점】**

-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보호 및 소통, 경영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고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외 공인인증(체육시설 안전경영, 생존수영교육), 선제적 시설점검 및 개선 노력은 매우 잘되고 있음
-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구 지급, 다양한 고충상담 장치 운영, 안전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자체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개선할 점】**

- 사회적 약자의 시설 이용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위한 리플릿, 사인물 설치 등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편의제공 시설 등의 개선과 확대 노력이 필요함



#### 4) 체육사업부(웅상문화체육센터)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비고  |
|-----|----------------|------|------|-----|
| 1   | 공정운영           | 100  | 100  | 100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100  | 100  | 100 |
| 3   | 안전보장           | 100  | 100  | 100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90   | 90   | 90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100  | 100 |
| 합 계 |                | 98   | 98   | 98  |

- 주요사업 중 **웅상문화체육센터**는 **98점**으로 **1등급**이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평가 점수를 받음**
- 공정운영은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침해 관련 조항을 고객센터현장에 명시·운영하며 ‘건의함’ 및 고객의 소리, 고객간담회 실시, 카카오톡채널, 지역 온라인 카페, 시민참여제안제도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비치, 외부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 이용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용이성을 위해 장애인주차장, 점자블록, 승강기 운영, 수유실, 장애인 리프트, 자체 휠체어 구비, 외국인 이용객을 위한 안내문, 리플릿 제작 등 **사회적 약자 및 외국인을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안전보장은 운동장 내 안전요원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및 이용고객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위급상황 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구급함과 제세동기가 배치되어 있고, 난간 등 안전바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적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및 난간 설치, 시설물 정기적인 점검, 수시 방역 실시 등의 안전조치가 매우 잘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O 45001) 획득**

- 근무자 인권보호는 각종 안전장구(마스크, 헬멧 등) 지급, 고충상담 창구운영, 고충상담 위원 면담, 찾아가는 고충상담, 자체 직원 면담, 익명 온라인 성폭력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내부청렴도 조사, 산업안전보건 및 폭력예방 교육,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근무자 휴게시설 설치 등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으나 휴게실 남녀구분 및 자체 감정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권고
- 지역주민 환경보장은 친환경 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 에너지 절감, 시설물 유지보수, 조경,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방역, 전기충전기 설치, 가스사고 보험가입 등 지역주민 환경보장에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  |
|---|--|
| <b>【잘된 점】</b>   |  |
| ·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보호 및 소통, 경영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고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외 공인인증(체육시설 안전경영, 생존수영교육), 선제적 시설점검 및 개선 노력은 매우 잘되고 있음 |  |
| ·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구 지급, 다양한 고충상담 장치 운영, 안전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  |
| <b>【개선할 점】</b>  |  |
| · 휴게실 남녀 구분 및 자체 감정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
| · 지역주민 환경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 노력이 필요함   |  |

5) 문화환경사업부(문화예술회관)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비고  |
|-----|----------------|------|------|-----|
| 1   | 공정운영           | 100  | 100  | 100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85   | 85   | 85  |
| 3   | 안전보장           | 100  | 100  | 100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90   | 90   | 90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100  | 100 |
| 합 계 |                | 95   | 95   | 95  |

- 주요사업 중 **문화예술회관**은 **95점**으로 **1등급**이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 점수를 받음**
- 공정운영은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침해 관련 조항을 조례 및 고객서비스헌장에 명시·운영하며 ‘건의함’ 및 고객의 소리, 카카오톡 채널, 시민참여제안제도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비치, 고객만족도 조사, 외부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 이용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은 장애인화장실, 승강기, 주차공간 운영, 휠체어 전용석, 안내표지판 설치, 요금할인 명시 및 수행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신속한 조치와 함께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점, **쌍벽루아트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하여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으나, 자체 휠체어 구비,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이용객을 위한 외국어 안내문, 리플릿 등 설치 권고
- 안전보장은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지속적인 직원 산업안전교육 실시, 구급함 및 제세동기 배치, 미끄럼방지,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위험성평가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화장실 비상벨 설치 권고
- 근무자 인권보호는 근무자 휴게공간 확보, 적절한 안전장구 지급과 고충상담 창구 운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권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내부청렴도 조사 등은 근무환경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자체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권고
- 지역주민 환경보장은 친환경 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 에너지절감, 시설물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 방역, 전기충전기 설치, 옥상 녹화사업, 차량 2부제 등 지역주민 환경보장에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잘된 점】**

-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보호 및 소통, 경영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고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외 공인인증, 선제적 시설점검 및 개선 노력은 매우 잘되고 있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획득
-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구 지급, 다양한 고충상담 장치 운영, 안전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개선할 점】**

- 자체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미화 냉난방기 설치 권고
- 사회적 약자의 시설 이용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체 휠체어 구비,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외국인을 위한 리플릿, 사인물 설치 등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편의제공 시설 등의 개선과 확대 노력이 필요

6) 문화환경사업부(대운산휴양림)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비고   |
|-----|----------------|------|------|------|
| 1   | 공정운영           | 100  | 100  | 100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87.5 | 87.5 | 87.5 |
| 3   | 안전보장           | 100  | 100  | 100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90   | 90   | 90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100  | 100  |
| 합 계 |                | 95.5 | 95.5 | 95.5 |

- 주요사업 중 **대운산휴양림**은 **95.5점**으로 **1등급**이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 점수를 받음
- 공정운영은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침해 관련 조항을 조례 및 고객서비스현장에 명시·운영하며 ‘건의함’ 및 고객의 소리, 카카오톡 채널, 시민참여제안제도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비치, 고객만족도 조사, 외부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 이용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은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주차공간 운영, 안내표지판 설치, 요금할인 명시 및 수행, 외국인을 위한 리플릿 설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신속한 조치와 함께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점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으나, 장애인을 위한 자체 휠체어 구비 등 설치 권고
- 안전보장은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직원 산업안전교육 실시, 주차 스톱퍼 및 안전 난간 설치, 구급함 및 제세동기 배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및 안심벨 설치, 위험성평가, 방역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음
- 근무자 인권보호는 근무자 휴게공간 확보, 적절한 안전장구 지급, 고충상담 창구 운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산업안전, 인권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내부청렴도 조사, 자체 면담 등은 근무환경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자체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및 근무자 휴게실 사내 권화기 설치 권고
- 지역주민 환경보장은 친환경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실천, 에너지 절감, 시설물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 방역, 전기차 운영 등 지역 주민 환경보장에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잘된 점】**

-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보호 및 소통, 경영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고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시설점검 및 개선 노력은 매우 잘되고 있음
-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구 지급, 다양한 고충상담 장치 운영, 안전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개선할 점】**

- 자체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미화실 전화기 설치 권고
- 사회적 약자의 시설 이용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체 휠체어 구비,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등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편의제공 시설 등의 개선과 확대 노력이 필요

7) 문화환경사업부(환경시설)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비고   |
|-----|----------------|------|------|------|
| 1   | 공정운영           | 100  | 100  | 100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3   | 안전보장           | 90   | 90   | 90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95   | 95   | 95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100  | 100  |
| 합 계 |                | 96.3 | 96.3 | 96.3 |

- 주요사업 중 **환경시설**은 **96.3점**으로 **1등급**이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 점수를 받음**
- 공정운영은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침해 관련 조항을 조례 및 고객서비스헌장에 명시·운영하며 ‘건의함’ 및 고객의 소리, 카카오톡 채널, 환경기술운영 지원, 각종 환경정보시스템 공개, 수질TMS, 시민참여제안제도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비치 등을 통해 이용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은 해당사항 없음
- 안전보장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직원 산업안전교육 실시, 구급함 및 인명구조장비 배치,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연간 시설물 안전점검, 제어반 난간대 설치, 작업환경측정, 환경정비, 방역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긴급한 상황 발생 대비 자체 제세동기 구비 권고
- 근무자 인권보호는 근무자 휴게공간 확보, 적절한 안전용품 및 안전화 지급과 고충상담 창구 운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산업안전, 인권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내부청렴도 조사, 자체 면담 등은 근무환경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자체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권고

- 지역주민 환경보장은 친환경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실천, 에너지 절감,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점검의 날, 작업환경측정, 수질악취검사, 환경정비, 방역 등 지역주민 환경보장에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잘된 점】**

- 직원의 권리보호 및 소통, 경영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시설점검 및 개선 노력은 매우 잘되고 있음
-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구 지급, 다양한 고충상담 장치 운영, 안전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개선할 점】**

- 자체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및 위급한 상황 대비 제세동기 구비 등 개선과 확대 노력이 필요

8) 문화환경사업부(유산매립장)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비고   |
|----|----------------|------|------|------|
| 1  | 공정운영           | 100  | 100  | 100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3  | 안전보장           | 90   | 90   | 90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95   | 95   | 95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100  | 100  |
| 합계 |                | 96.3 | 96.3 | 96.3 |

- 주요사업 중 **유산매립장**은 **96.3점**으로 **1등급**이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 점수를 받음**
- 공정운영은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침해 관련 조항을 조례 및 고객서비스헌장에 명시·운영하며 ‘건의함’ 및 고객의 소리, 폐기물 운반업체 협의,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민참여제안제도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비치 등을 통해 이용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은 해당사항 없음

- 안전보장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직원 산업안전교육 실시, 구급함 및 인명구조장비 배치,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연간 시설물 안전점검, 울타리 난간대 설치, 작업환경측정, 환경정비, 시설물 및 주변마을 방역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긴급한 상황 발생 대비 자체 제세동기 구비 권고
- 근무자 인권보호는 근무자 휴게공간 확보, 적절한 안전용품 및 안전화 지급과 고충상담 창구 운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산업안전, 인권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내부청렴도 조사, 자체 면담 등은 근무환경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자체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권고
- 지역주민 환경보장은 친환경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실천, 에너지 절감,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점검의 날, 작업환경측정, 수질악취 검사, 환경정비,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변마을 방역 등 지역 주민 환경보장에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  |
|---|--|
| <b>【잘된 점】</b>   |  |
| · 직원의 권리보호 및 소통, 경영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시설점검 및 개선 노력은 매우 잘되고 있음  |  |
| ·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구 지급, 다양한 고충상담 장치 운영, 안전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  |
| <b>【개선할 점】</b>  |  |
| · 자체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및 위급한 상황 대비 제세동기 구비 등 개선과 확대 노력이 필요                        |  |

9) 문화환경사업부(공원주차관리)

-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 연번  | 평가지표           | 1차평가 | 2차평가 | 비고   |
|-----|----------------|------|------|------|
| 1   | 공정운영           | 100  | 100  | 100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85   | 80   | 82.5 |
| 3   | 안전보장           | 100  | 100  | 100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95   | 90   | 92.5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00  | 100  | 100  |
| 합 계 |                | 96   | 94   | 95   |



- 주요사업 중 **공원주차관리**는 **95점**으로 **1등급**이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 점수를 받음**
- 공정운영은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침해 관련 조항을 조례 및 고객서비스헌장에 명시·운영하며 ‘건의함’ 및 고객의 소리, 카카오톡 채널, 시민참여제안제도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비치, 고객만족도 조사, 외부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 이용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은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주차공간 운영, 안내표지판 설치, 요금할인 명시 및 수행, 점자 안내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신속한 조치와 함께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점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으나, 장애인을 위한 자체 휠체어 구비, 외국인을 위한 안내문, 리플릿 등 설치 권고
- 안전보장은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직원 산업안전교육 실시, 주차 스톱퍼 및 안전 난간 설치, 구급함 및 제세동기 배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및 안심벨 설치, 위험성평가, 수시 방역, 화재경보기 대여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음
- 근무자 인권보호는 근무자 휴게공간 확보, 적절한 안전장구 지급과 고충상담 창구 운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산업안전, 인권 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성희롱성폭력 설문조사, 등은 근무환경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자체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권고
- 지역주민 환경보장은 친환경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실천, 에너지 절감, 시설물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 잔디관리, 수시 방역, 에코카 운영 등 지역주민 환경보장에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잘된 점】**

- 시설 이용고객의 권리보호 및 소통, 경영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고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외 공인인증, 선제적 시설점검 및 개선 노력은 매우 잘되고 있음
-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구 지급, 다양한 고충상담 장치 운영, 안전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개선할 점】**

- 자체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사회적 약자의 시설 이용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외국인을 위한 리플릿, 사인물 설치 등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편의제공 시설 등의 개선과 확대 노력이 필요

## VI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환류**

### 1. 총 평

- 인권영향평가는 공단의 임직원,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경영체계 확립과 구체적 시행여부에 대해서 확인 평가하는 과정으로, 우리 공단은 2018년 11월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권고, 인권경영 이행계획 및 지침을 제정 발령하고 연계하여 책임경영 선언과 인권경영 실천 선포식을 통하여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여 의지 표명의 의미가 크다 하겠음
- 임직원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보호신고센터(고충상담실),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 지원,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전 사업팀 담당자 구성, 전 직원 대상 전문 인권교육, 고충상담위원 선정 및 전문교육, 인권경영 담당자 회의 운영, 인권구제 절차 제공, 찾아가는 고충해결 서비스, 감정근로자 건강보호 치유프로그램, 노사상생워크숍, CEO 소통청렴 핫라인 구축, 윤리헌장, 청렴서약, 임직원 갑질근절 서약, 성희롱성폭력근절 서약, 캠페인, 전문기관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설문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더 존중 더 배려 캠페인, 자문노무사 운영 등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권경영의 노력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고 있으며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개선과제)는 사업팀 공문 발송과 게시판 게시와 인권경영 담당자회의, 인권경영위원회 등을 통해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여 개선에 나아가고자 하며, 이용

고객, 특히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가 공단 운영·관리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에 대해 선제적·우선적 보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개선중임

- 또한, 공단 경영활동 과정에서 투명하고 실행력 있는 인권보호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수정보완 제도화하여 인권경영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고객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에 공단의 노력이 필요함
- 다만 산업안전 보장 영역에서 작업장 내 안전 관련 등 수시 점검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고,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영역에서 내부 근로자 및 협력회사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반영해 주시고, 환경권 보장 영역에서 환경관련 정보의 종합적 수집과 평가, 공개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주민포함)와의 환경정책 개발 협의 및 훈련 교육 필요함
- 향후 인권경영활동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도출된 권고사항(개선과제)은 개선 및 빅데이터화하여 다년간의 인권평가 데이터가 축적되어 공단의 신규사업 및 사업 영역 확대 시 사전 적용 활용으로 인권 침해 예방과 방지로서 인권경영의 긍정적 성과로 확대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하며 인권경영 문화와 인식이 공단 전체에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할 예정임

## 2. 향후계획

-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유 : 2021. 11.
  - 인권경영담당자 토론회를 통해 평가결과를 전 직원과 공유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고 : 2021. 11.
  - 평가결과 도출된 보안 및 권고사항(개선과제)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및 실행계획 수립
- 평가결과 홈페이지, 타 공기업 등에 우수사례 전파 및 공유 : 2021. 11. ~ 12.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공단 홍보 확대와 대외적 공공성 확보



**붙임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결과**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종합통계표**

|     | 분야              | 답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요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27   | 3        | 0   | 0        | 0        |
| 2   | 고용상의 비차별        | 14   | 0        | 0   | 0        | 0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14   | 0        | 0   | 0        | 0        |
| 4   | 강제노동의 금지        | 8    | 0        | 0   | 0        | 3        |
| 5   | 아동노동의 금지        | 6    | 0        | 0   | 0        | 8        |
| 6   | 산업안전 보장         | 16   | 1        | 0   | 0        | 0        |
| 7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7    | 2        | 0   | 0        | 1        |
| 8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1    | 0        | 0   | 0        | 9        |
| 9   | 환경권 보장          | 11   | 4        | 0   | 0        | 2        |
| 10  | 고객 인권보호         | 10   | 0        | 0   | 0        | 2        |
| 11  | 직장 내 인권보호       | 11   | 0        | 0   | 0        | 0        |
| 합 계 |                 | 125  | 10       | 0   | 0        | 25       |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분야      | 인권존중 정책 선언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2) | 11   | 10 | 1     |     |       |       |   |
| 1       | 공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인권정책선언을 했다.                     | ○  |       |     |       |       | · 인권경영선언(경영-171, 2019.01.07.)<br>· 인권경영 이행지침(제14조)  |
| 2       | 인권정책선언은 공단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  |       |     |       |       | · 인권경영선언(경영-171, 2019.01.07.)   |
| 3       |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공단 내·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  |       |     |       |       |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위촉(감사평가-1751, 2021.06.17.)<br>· 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결과(감사평가-2245, 2021.07.26.)                    |
| 4       |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공단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 ○  |       |     |       |       | · 인권경영 매뉴얼<br>· 인권경영현장 선포식(경영-171, 2019.01.07.)   |
| 5       |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  |       |     |       |       | · 인권경영선언(경영-171, 2019.01.07.)<br>· 인권경영현장 공유및확산(경영-209, 2019.01.07.)<br>· 갑질근절서약식(감사평가-1743, 2020.07.13.) |
| 6       |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 ○     |     |       |       | ·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14조<br>· 재검토 필요  |

| 분야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2) | 11                                       | 10 | 1     |     |       |       |   |
| 1       |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  |       |     |       |       | · 2020년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감사평가-2786, 2020.11.03.)<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26조 |
| 2       |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26조                 |
| 3       |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공단 내·외부의                     | ○  |       |     |       |       | · 2021년인권영향평가   |

|   |   |   |   |  |  |  |  |
|---|---|---|---|--|--|--|--|
|   |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   |  |  |  | 실시계획(감사평가-2366,2021,08.10.)                                  |
| 4 | 기업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 ○ |   |  |  |  | · 2021년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감사평가-2366,2021,08.10.)<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30조 |
| 5 |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 ○ |  |  |  | · 2021년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감사평가-2366,2021,08.10.)                    |
| 6 |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 |   |  |  |  | · 2021년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감사평가-2366,2021,08.10.)<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26조 |

| 분야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9   | 8 | 1     |     |       |       |  |
| 1       |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 |       |     |       |       | · 2021년인권경영 이행계획(감사평가-288,2021.01.26.)<br>· 인권경영이행지침<br>· 인권침해구제절차   |
| 2       | 공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 ○ |       |     |       |       | · 2021년인권경영 이행계획(감사평가-288,2021.01.26.)<br>· 2021년인권실천 인권담당자지정 (감사평가-999, 2021.04.07.)<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15조(주관부서) |
| 3       | 공단은 인권 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 ○ |       |     |       |       | · 인권경영이행지침 제26조(이행사항 점검및공시)<br>· 인권침해구제절차 지침제3조~24조  |
| 4       | 공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 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       |     |       |       | · 인권경영이행지침 제26조(이행사항 점검및공시)<br>· 인권침해구제절차 제3조~24조<br>· 직장내괴롭힘금지 에관한지침 제5조(직장내괴롭힘 발생시처리절차)                      |
| 5       |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회사차원에서 대응 한다.           |   | ○     |     |       |       | · 인권경영이행지침 제30조, 보안필요  |

|    |         |    |
|----|---------|----|
| 분야 | 인권경영 성과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
| 점수<br>(14) | 14  | 14 |          |     |          |          |   |
| 1          | 공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  |          |     |          |          | · 인권경영이행지침 제27조<br>(인권영향평가 실시)<br>· 2021년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감사평가-2366,2021.08.10.) |
| 2          |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  |          |     |          |          | · 2021년<br>인권경영위원회 1,2차 회의결과<br>· 2021년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감사평가-2366,2021.08.10.)   |
| 3          |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한다.                     | ○  |          |     |          |          | · 2021년<br>인권경영위원회 1,2차 회의결과<br>· 2021년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감사평가-2366,2021.08.10.)   |
| 4          |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  |          |     |          |          | · 인권경영이행지침 제26조(이행사항 점검및공시)<br>· 2021년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감사평가-2366,2021.08.10.)    |
| 5          | 보고는 공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  |          |     |          |          | · 2021년<br>인권경영위원회 1차, 2차 회의결과<br>· 2021년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감사평가-2366,2021.08.10.) |
| 6          |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  |          |     |          |          | · 2021년<br>인권경영위원회 1,2차 회의결과<br>· 2021년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감사평가-2366,2021.08.10.)   |
| 7          | 보고 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  |          |     |          |          | · 2021년<br>인권경영위원회 1,2차 회의결과<br>· 2021년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감사평가-2366,2021.08.10.)   |

| 분야         | 구제절차 마련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 점수<br>(12) | 12  | 12 |          |     |          |          |  |
| 1          |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 ○  |          |     |          |          | ·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장(인권의 구제)<br>· 인권침해구제절차 지침제3조~24조 |
| 2          |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  |   |  |  |  |  |  |
|---|--|---|--|--|--|--|--|
|   |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  |  |  |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2장(인권경영일반 원칙)     |
| 3 |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 |  |  |  |  | ·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장(인권의 구제)<br>· 인권침해구제절차 지침제3조~24조 |
| 4 |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 |  |  |  |  | ·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장(인권의 구제)<br>· 인권침해구제절차 지침제3조~24조 |
| 5 | 피해자가 회사 구제절차 이외의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 ○ |  |  |  |  | ·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장(인권의 구제)<br>· 인권침해구제절차 지침제3조~24조 |
| 6 |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 |  |  |  |  | ·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장(인권의 구제)<br>· 인권침해구제절차 지침제3조~24조 |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 분야      | 고용상의 비차별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10   | 10 |       |     |       |       |  |
| 1       |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  |       |     |       |       | · 취업규정 제5조(균등대우)<br>·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조(공개채용)   |
| 2       | 공단은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  |       |     |       |       | · 취업규정 제5조(균등대우)<br>·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조(공개채용)<br>· 인권경영헌장                                       |
| 3       |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  |       |     |       |       | · 보수규정 제3장기본급 별표1, 별표2, 별표3<br>· 양산시공무직 근로자호봉제기준<br>· 취업규정 제5조(균등대우)<br>제10장(남녀고용 평등및모자보건) |
| 4       | 공단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  |       |     |       |       | · 취업규정 제5조(균등대우)<br>제10장(남녀고용 평등및모자보건)<br>· 인사규정 (제4장승진및승급)                                |
| 5       | 공단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  |       |     |       |       | · 취업규정 제4조(신분보장)<br>제10장(남녀고용)   |

|  |  |  |  |  |  |  |  |                                  |
|--|--|--|--|--|--|--|--|----------------------------------|
|  |  |  |  |  |  |  |  | 평등및모자보건)<br>· 인사규정<br>제26조(신분보장) |
|--|--|--|--|--|--|--|--|----------------------------------|

| 분야         | 고용상의 남녀비차별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 점수<br>(12) | 12   | 12 |          |     |          |          |   |
| 1          | 공단은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  |          |     |          |          | · 지방공기업<br>블라인드 채용<br>가이드라인 적용<br>· 인사규정시행내규<br>제2장채용   |
| 2          |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  |          |     |          |          | · 취업규정<br>제5조(균등대우)<br>제10장(남녀고용평등<br>및모자보건)<br>· 인사규정<br>제10장보수  |
| 3          |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  |          |     |          |          | · 보수규정<br>제3장기본급<br>별표1,별표2,별표3<br>· 양산시공무직<br>근로자호봉제기준<br>· 취업규정<br>제5조(균등대우)<br>제10장(남녀고용평등<br>및모자보건) |
| 4          | 공단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  |          |     |          |          | · 취업규정<br>제5조(균등대우)<br>제10장(남녀고용평등<br>및모자보건)<br>· 인사규정<br>(제4장승진및승급)                                    |
| 5          | 공단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  |          |     |          |          | · 취업규정<br>제4조(신분보장)<br>제10장(남녀고용평등<br>및모자보건)<br>· 인사규정<br>제26조(신분보장)                                    |
| 6          | 공단은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  |          |     |          |          | · 취업규정<br>제10장(남녀고용평등<br>및모자보건)<br>· 인사규정   |

| 분야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 점수<br>(6) | 6                                      | 6 |          |     |          |          |                                      |
| 1         | 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 ○ |          |     |          |          | · 근로기준법 준수<br>· 노사협의회 규정<br>· 기간제근로자 |

|   |  |   |  |  |  |  |   |
|---|--|---|--|--|--|--|---|
|   |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  |  |  |  | 관리규정<br>· 인사규정시행내규<br>및인권경영현장   |
| 2 | 공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공단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 |  |  |  |  | · 근로기준법 준수<br>· 노사협의회 규정<br>· 기간제근로자<br>관리규정<br>· 인사규정시행내규<br>및인권경영현장 |
| 3 |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 |  |  |  |  | · 인사규정<br>제10장보수<br>· 기간제근로자<br>관리규정(근로계약서)                           |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분야     |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8) | 8  | 8 |       |     |       |       |   |
| 1      | 공단은 노동조합(노사협의회)의 설립을 허용한다.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br>· 단체교섭노동조합협정 (경영-4814, 2021.07.22)               |
| 2      | 공단은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br>· 단체협약서 제4조(조합활동의보장)                             |
| 3      | 공단은 노동조합(노사협의회)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br>· 단체협약서 제9조(시설면의제공)                              |
| 4      | 공단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br>및노사협의회회의결서<br>· 단체교섭노동조합협정 (경영-4814, 2021.07.22) |

| 분야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10   | 10 |       |     |       |       |   |
| 1       | 노동자가 노동조합(노사협의회)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및<br>노사협의회회의결서<br>· 단체협약서<br>제4조(조합활동의보장)<br>· 인권경영이행지침<br>제5조(노동3권 보장) |

|   |   |   |  |  |  |  |  |
|---|---|---|--|--|--|--|--|
|   | 하지 않는다.   |   |  |  |  |  |  |
| 2 |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노사협의회)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및 노사협의회결의서<br>· 단체협약서<br>제3조(차별대우금지)<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5조(노동3권 보장)                    |
| 3 |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노사협의회)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및 노사협의회결의서<br>· 단체협약서<br>제4조(조합활동의보장)<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5조(노동3권 보장)                   |
| 4 | 노동조합(노사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및 노사협의회결의서<br>· 단체협약서<br>제4조(조합활동의보장)<br>제11조(조합활동참해금지)<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5조(노동3권 보장) |
| 5 |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및 노사협의회결의서<br>· 단체협약서<br>제4조(조합활동의보장)<br>제11조(조합활동참해금지)<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5조(노동3권 보장) |

| 분야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10   | 10 |       |     |       |       |   |
| 1       | 공단은 노동조합(노사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및 노사협의회결의서<br>· 단체협약서<br>제22조(교섭원칙)<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5조(노동3권 보장)    |
| 2       | 공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및 노사협의회결의서<br>· 단체협약서<br>제10조(자료열람및제공)<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5조(노동3권 보장) |
| 3       | 공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및 노사협의회결의서<br>· 단체협약서<br>제4조(조합활동의보장)                             |
| 4       | 공단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사대표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및 노사협의회결의서<br>· 단체협약서   |

|   |   |   |  |  |  |  |   |
|---|---|---|--|--|--|--|---|
|   | 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  |  |  |  | 제4조(조합활동의보장)<br>제25조(대표위원의무참석)                                    |
| 5 | 공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및<br>노사협의회의결서<br>· 단체협약서<br>제3조(차별대우금지)<br>제4조(조합활동의보장) |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 분야         | 강제노동의 금지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 점수<br>(16) | 16  | 16 |          |     |          |          |  |
| 1          |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  |          |     |          |          | · 근로기준법<br>제7조(강제근로의금지)<br>준수<br>· 인권경영이행지침<br>제6조(강제노동및아<br>동노동금지)                              |
| 2          |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  |          |     |          |          | · 근로기준법 준수<br>및 인사규정, 업무직<br>등 근로자 관리규정<br>· 인권경영이행지침<br>제5조(노동3권 보장)                            |
| 3          | 공단은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  |          |     |          |          | · 근로기준법 준수<br>및 인사규정, 업무직<br>등 근로자 관리규정<br>· 인권경영이행지침<br>제5조(노동3권 보장)                            |
| 4          | 공단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  |          |     |          |          | · 근로기준법 준수<br>및 인사규정, 업무직<br>등 근로자 관리규정<br>· 인권경영이행지침<br>제5조(노동3권 보장)                            |
| 5          | 공단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  |          |     |          |          | · 근로기준법<br>제7조(강제근로의금지)<br>준수 및 인사규정,<br>업무직 등 근로자<br>관리규정<br>· 인권경영이행지침<br>제6조(강제노동및아<br>동노동금지) |
| 6          | 공단은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 ○  |          |     |          |          | · 근로기준법<br>제7조(강제근로의금지)<br>준수 및 인사규정,<br>업무직 등 근로자<br>관리규정<br>· 인권경영이행지침<br>제6조(강제노동및아<br>동노동금지) |
| 7          |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  |          |     |          |          | · 근로기준법 준수<br>및 인사규정, 업무직  |

|   |   |   |  |  |  |  |  |
|---|---|---|--|--|--|--|--|
|   |   |   |  |  |  |  | 등 근로자 관리규정<br>· 취업규정<br>(제15조근무시간)                           |
| 8 |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공단을 그만둘 수 있다. | ○ |  |  |  |  | · 근로기준법 준수<br>및 인사규정, 업무직<br>등 근로자 관리규정<br>· 취업규정<br>제5장(퇴직) |

| 분야     |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6) | -  |   |       |     |       | 3     |        |
| 1      | 공단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 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해당없음 |
| 2      |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       |     |       | ○     | · 해당없음 |
| 3      |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       |     |       | ○     | · 해당없음 |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 분야      | 연소자 고용 금지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2) | 12                                      | 12 |       |     |       |       |   |
| 1       |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  |       |     |       |       | · 인사규정 제9조(채용연령)<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 2       | 공단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  |       |     |       |       | · 인사규정 제9조(채용연령)<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 3       | 공단은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  |       |     |       |       | · 인사규정 제9조(채용연령)<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 4       | 공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                      | ○  |       |     |       |       | · 인사규정  |

|   |  |   |  |  |  |  |   |
|---|--|---|--|--|--|--|---|
|   | 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   |  |  |  |  | 제9조(채용연령)<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 5 | 공단은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 ○ |  |  |  |  | · 응시원서<br>접수시증빙자료확인<br>·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조(공개채용) 제4조<br>(응시자의제출서류 등) |
| 6 |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 ○ |  |  |  |  | · 응시원서<br>접수시증빙자료확인<br>·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조(공개채용) 제4조<br>(응시자의제출서류 등) |

| 분야      |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6) | -  |   |       |     |       | 8     |   |
| 1       |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 조치를 취한다. |   |       |     |       | ○     | · 인사규정 제9조(채용연령)<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 2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   |       |     |       | ○     | · 인사규정 제9조(채용연령)<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 3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       |     |       | ○     | · 인사규정 제9조(채용연령)<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 4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   |       |     |       | ○     | · 인사규정 제9조(채용연령)<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 5       |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     |       | ○     | · 인사규정 제9조(채용연령)<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 6       | 공단은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       |     |       | ○     | · 인사규정 제9조(채용연령)<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 7       | 공단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       |     |       | ○     | · 인사규정 제9조(채용연령)<br>· 인권경영이행지침                    |

|   |   |  |  |  |  |   |   |
|---|---|--|--|--|--|---|---|
|   |   |  |  |  |  |   |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 8 |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  |  |  | ○ | · 인사규정<br>제9조(채용연령)<br>· 인권경영이행지침<br>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 분야      | 작업장 안전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10   | 10 |       |     |       |       |  |
| 1       |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 ○  |       |     |       |       | · 매월<br>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br>· 2021년위험성평가 실시계획(경영-2932, 2021.05.12.)<br>· 2021년상반기정기 위험성평가결과(경영-3811, 2021.06.15.)<br>· 2021년산업안전보건관리추진계획(경영-536, 2021.01.29.)<br>· 2021년산업안전보건교육추진계획(경영-68, 2021.01.06.)<br>·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지침 |
| 2       | 공단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  |       |     |       |       | · 2021년위험성평가 실시계획(경영-2932, 2021.05.12.)<br>· 2021년상반기정기 위험성평가결과(경영-3811, 2021.06.15.)<br>· 2021년산업안전보건관리추진계획(경영-536, 2021.01.29.)<br>· 2021년산업안전보건교육추진계획(경영-68, 2021.01.06.)<br>·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지침                        |
| 3       | 공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 보관시설,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  |       |     |       |       | · 2021년위험성평가 실시계획(경영-2932, 2021.05.12.)<br>· 2021년상반기정기 위험성평가결과(경영-3811, 2021.06.15.)<br>· 2021년산업안전보건관리추진계획(경영-536, 2021.01.29.)  |



|   |  |   |  |  |  |  |   |
|---|--|---|--|--|--|--|---|
|   |  |   |  |  |  |  | · 2021년산업안전보건교육추진계획(경영-68,2021.01.06.)<br>·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지침   |
| 4 |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 |  |  |  |  | · 매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br>· 2021년위험성평가 실시계획(경영-2932,2021.05.12.)<br>· 2021년상반기정기 위험성평가결과(경영-3811,2021.06.15.)<br>· 2021년산업안전보건관리추진계획(경영-536,2021.01.29.)<br>· 2021년산업안전보건교육추진계획(경영-68,2021.01.06.)<br>·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지침 |
| 5 | 공단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 |  |  |  |  | · 2021년위험성평가 실시계획(경영-2932,2021.05.12.)<br>· 2021년산업안전보건관리추진계획(경영-536,2021.01.29.)<br>· 2021년도친환경경영추진계획(경영-736,2021.02.08.)<br>·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지침, 보안필요   |

| 분야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8) | 7   | 6 | 1     |     |       |       |  |
| 1      |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 |       |     |       |       | · 2021년산업안전보건관리추진계획(경영-536,2021.01.29.)<br>· 2021년산업안전보건교육추진계획(경영-68,2021.01.06.)<br>·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지침 |
| 2      | 공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 ○ |       |     |       |       | · 근로기준법 준수<br>· 인사규정 제9조(채용연령)<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
| 3      |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 ○ |       |     |       |       | · 근로기준법 준수<br>· 인사규정   |

|   |                                      |  |   |  |  |  |  |
|---|--------------------------------------|--|---|--|--|--|--|
|   |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  |  |  | · 취업규정 제10장(남녀고용평등 및 모자보건)                                 |
| 4 | 장애인들이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 ○ |  |  |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경영-4654.2020.07.30.)<br>·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시, 보안필요 |

| 분야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   |    |       |     |       | 근거   |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
| 접수 (10) |                  | 10  | 10 |       |     |       |  |
| 1       |                  | 공단은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       |     |       | · 2021년상반기정기 위험성평가결과(경영-3811,2021.06.15.)<br>· 2021년산업안전보건관리추진계획(경영-536,2021.01.29.)<br>· 2021년산업안전보건교육추진계획(경영-68,2021.01.06.)<br>·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지침  |
| 2       |                  |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  |       |     |       | · 2021년위험성평가 실시계획(경영-2932,2021.05.12.)<br>· 2021년상반기정기 위험성평가결과(경영-3811,2021.06.15.)<br>· 2021년산업안전보건관리추진계획(경영-536,2021.01.29.)<br>· 2021년산업안전보건교육추진계획(경영-68,2021.01.06.)<br>·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경영-4654.2020.07.30.) |
| 3       |                  |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 ○  |       |     |       | · 2021년위험성평가 실시계획(경영-2932,2021.05.12.)<br>· 2021년상반기정기 위험성평가결과(경영-3811,2021.06.15.)<br>· 2021년산업안전보건관리추진계획(경영-536,2021.01.29.)<br>· 2021년산업안전보건교육추진계획(경영-68,2021.01.06.)<br>·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경영-4654.             |

|   |   |   |  |  |  |  |  |
|---|---|---|--|--|--|--|--|
|   |   |   |  |  |  |  | 2020.07.30.)   |
| 4 | 공단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 ○ |  |  |  |  | · 2021년위험성평가 실시계획(경영-2932,2021.05.12.)<br>· 2021년상반기정기 위험성평가결과(경영-3811,2021.06.15.)<br>· 2021년산업안전보건관리추진계획(경영-536,2021.01.29.)<br>· 2021년산업안전보건교육추진계획(경영-68,2021.01.06.)<br>·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경영-4654,2020.07.30.) |
| 5 | 공단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 |  |  |  |  | · 2021년직원건강검진비지원계획(경영-272,2021.01.18.)<br>· 2021년건강검진대상자통보(경영-1739,2021.03.24.)  |

| 분야     |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6) | 6   | 6 |       |     |       |       |   |
| 1      | 공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 ○ |       |     |       |       | · 보수규정 제8조(휴직기간중의 보수)<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2      |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 ○ |       |     |       |       | · 보수규정 제8조(휴직기간중의 보수)<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3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 |       |     |       |       | · 2021년산업안전보건관리추진계획(경영-536,2021.01.29.)<br>· 2021년산업안전보건교육추진계획(경영-68,2021.01.06.)<br>· 분기별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br>· 산업안전보건관리운영지침 |

▶ 분야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분야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   |   |  |  |  |   |  |
|-----------|---|---|--|--|--|---|--|
| 점수<br>(6) | 6   | 6 |  |  |  | 1 |  |
| 1         | 공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 |  |  |  |   | · 인권보호이행서약서제도실시(경영-2980,2021.05.13.)<br>· 인권경영이행지침           |
| 2         | 공단은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3         | 공단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 |  |  |  |   | · 인권보호이행서약서제도실시(경영-2980,2021.05.13.)<br>· 인권경영이행지침<br>· 보안필요 |
| 4         | 공단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 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 |  |  |  |   | · 인권보호이행서약서제도실시(경영-2980,2021.05.13.)<br>· 인권경영이행지침           |

| 분야        | 모니터링 실시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br>(4) | 3   | 2 | 1     |     |       |       |  |
| 1         |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 |       |     |       |       | · 인권보호이행서약서제도실시(경영-2980,2021.05.13.)<br>· 불공정계약 실태조사결과(감사평가-1718.2021.06.15) |
| 2         |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   | ○     |     |       |       | · 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 도출 과제 검토<br>· 인권경영이행지침  |

| 분야        |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br>(8) | 7  | 6 | 1     |     |       |       |  |
| 1         | 공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 |       |     |       |       | · 2021년 공단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경영-2424,2021.04.20.)<br>· 인권경영이행지침 |
| 2         | 공단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                     | ○ |       |     |       |       | · 2021년공단개인정보 보호교육계획                                     |

|   |  |   |   |  |  |  |   |
|---|--|---|---|--|--|--|---|
|   | 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   |  |  |  | (경영-2492, 2021.04.22.)<br>· 인권경영이행지침 제16조(인권교육)           |
| 3 |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 ○ |   |  |  |  | · 인권보호이행서약 서제도 실시(경영-2980, 2021.05.13.)                   |
| 4 |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 ○ |  |  |  | · 인권보호이행서약 서제도 실시(경영-2980, 2021.05.13.)<br>· 보안필요, 모니터링강화 |

▶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분야      | 지역주민 인권항목의 존중 · 보호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접수 (14) | 2   | 2 |       |     |       | 6     |  |
| 1       |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   |       |     |       | ○     | · 해당없음                                       |
| 2       | 관련 법령에서 회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 ○ |       |     |       |       |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감사평가-716, 2021.03.10.) |
| 3       |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관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       | ○     | · 해당없음                                       |
| 4       |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       |     |       | ○     | · 해당없음                                       |
| 5       |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   |       |     |       | ○     | · 해당없음                                       |
| 6       |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       |     |       | ○     | · 해당없음                                       |
| 7       |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   |       |     |       | ○     | · 해당없음                                       |

| 분야     |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6) | -   |   |       |     |       | 3     |        |
| 1      |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       |     |       | ○     | · 해당없음 |
| 2      |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   |       |     |       | ○     | · 해당없음 |
| 3      |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       |     |       | ○     | · 해당없음 |

▶ 분야 9. 환경권 보장

| 분야      |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9   | 8 | 1     |     |       |       |  |
| 1       | 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 |       |     |       |       | · 2021년도친환경경영추진계획(경영-736,2021.02.08.)<br>· 중장기친환경경영종합계획(경영-5347,2020,08.28.) |
| 2       | 공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 ○ |       |     |       |       | · 2021년도친환경경영추진계획(경영-736,2021.02.08.)<br>· 중장기친환경경영종합계획(경영-5347,2020,08.28.) |
| 3       |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 |       |     |       |       | · 2021년도친환경경영추진계획(경영-736,2021.02.08.)<br>· 중장기친환경경영종합계획(경영-5347,2020,08.28.) |
| 4       | 공단은 공단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 ○     |     |       |       | · 2021년도친환경경영추진계획(경영-736,2021.02.08.)<br>· 중장기친환경경영종합계획(경영-5347,2020,08.28.) |
| 5       |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 ○ |       |     |       |       | · 2021년도친환경경영추진계획(경영-73  |

|  |  |  |  |  |  |  |   |
|--|--|--|--|--|--|--|---|
|  |  |  |  |  |  |  | 6,2021.02.08.)<br>· 중장기친환경경영<br>종합계획(경영-5347<br>,2020,08.28.)<br>· 2021년산업안전보<br>건교육추진계획(경영<br>-68,2021.01.06.) |
|--|--|--|--|--|--|--|---|

| 분야        | 환경정보의 공개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 점수<br>(6) | 5   | 4 | 1        |     |          |          |  |
| 1         | 공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 ○ |          |     |          |          | · 2021년도친환경경영추진계획(경영-736,2021,02.08.)<br>· 수질검사결과공개<br>· 오폐수환경측정공개<br>· 운동장전광판게시 |
| 2         |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 ○ |          |     |          |          | · 2021년도친환경경영추진계획(경영-736,2021,02.08.)<br>· 수질검사결과공개<br>· 오폐수환경측정공개<br>· 운동장전광판게시 |
| 3         |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 ○        |     |          |          | · 2021년도친환경경영추진계획(경영-736,2021,02.08.)<br>· 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 도출 과제 검토                 |

| 분야        | 환경문제에 예방적접근의 원칙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 점수<br>(8) | 4   | 4 |          |     |          | 2        |  |
| 1         |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 |          |     |          |          | · 2021년도친환경경영추진계획(경영-736,2021,02.08.)<br>· 중장기친환경경영종합계획(경영-5347,2020,08.28.) |
| 2         |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          |     |          | ○        | · 해당없음   |
| 3         |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   |          |     |          |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취한다.   |   |  |  |  |  |  |
| 4 |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 |  |  |  |  | · 2021년도친환경경영추진계획(경영-736,2021.02.08.)<br>· 중장기친환경경영종합계획(경영-5347,2020.08.28.) |

| 분야      | 비상계획 수립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8   | 6 | 2     |     |       |       |  |
| 1       |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 |       |     |       |       | · 사업팀위기상황대응매뉴얼정비계획(경영-1271,2021.03.04.)<br>· 재난안전관리 운영지침         |
| 2       | 공단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       |     |       |       | · 2021년공단재난상황모의훈련계획(경영-1277,2021.03.05.)<br>· 재난안전관리 운영지침        |
| 3       | 공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 ○     |     |       |       | 사업팀위기상황대응매뉴얼정비계획(경영-1271,2021.03.04.)<br>· 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 도출 과제 검토 |
| 4       | 공단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 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 ○ |       |     |       |       | · 2021년공단재난상황모의훈련계획(경영-1277,2021.03.05.)<br>· 재난안전관리 운영지침        |
| 5       | 공단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   | ○     |     |       |       | 사업팀위기상황대응매뉴얼정비계획(경영-1271,2021.03.04.)<br>· 재난안전관리 운영지침           |

▶ 분야 10. 고객 인권보호

| 분야      |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2) | 8               | 8 |       |     |       | 2     |    |



|   |   |   |  |  |  |   |                                  |
|---|---|---|--|--|--|---|----------------------------------|
| 1 |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2 | 공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   |  |  |  | ○ | · 해당없음                           |
| 3 | 고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 |  |  |  |   | · 공단 홈페이지게시 (사업별 시설현황 및 이용안내 게시) |
| 4 |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고객을 속이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 ○ |  |  |  |   | · 공단 홈페이지게시 (사업별 시설현황 및 이용안내 게시) |
| 5 |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  |  |  |   | · 공단 홈페이지게시 (사업별 시설현황 및 이용안내 게시) |
| 6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 ○ |  |  |  |   | · 공단 홈페이지게시 (사업별 시설현황 및 이용안내 게시) |

| 분야      | 고객 사생활 보호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2) | 12  | 12 |       |     |       |       |  |
| 1       | 공단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       |     |       |       | · 2021년공단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경영-2424,2021.04.20.)<br>· 2021년 공단개인정보보호추진계획(경영-2466, 2021.04.22.)<br>· 공단개인정보침해사고대응지침개정(경영-2458, 2021.04.22.)<br>· 개인정보처리방침개정(경영-2489, 2021.04.22.) |
| 2       |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 ○  |       |     |       |       | · 2021년 공단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경영-2424,2021.04.20.)  |

|   |   |   |  |  |  |  |  |
|---|---|---|--|--|--|--|--|
|   |   |   |  |  |  |  | · 2021년 공단<br>개인정보보호추진계획<br>(경영-2466,<br>2021.04.22.)<br>· 개인정보처리방침<br>개정(경영-2489,<br>2021.04.22.)   |
| 3 |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 |  |  |  |  | · 2021년 공단<br>개인정보<br>내부관리계획(경영-<br>2424,2021.04.20.)<br>· 개인정보처리방침<br>개정(경영-2489,<br>2021.04.22.)   |
| 4 |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 |  |  |  |  | · 2021년 공단<br>개인정보보호추진계획<br>(경영-2466,<br>2021.04.22.)<br>· 개인정보처리방침<br>개정(경영-2489,<br>2021.04.22.)<br>· 2021년공단개인정보<br>파일일제정비결과<br>(경영-3427,<br>2021.06.02.) |
| 5 | 고객 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 · 2021년 공단<br>개인정보보호추진계획<br>(경영-2466,<br>2021.04.22.)<br>· 개인정보처리방침<br>개정(경영-2489,<br>2021.04.22.)<br>· 2021년공단개인정보<br>파일일제정비결과<br>(경영-3427,<br>2021.06.02.) |
| 6 |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 |  |  |  |  | · 2021년 공단<br>개인정보보호추진계획<br>(경영-2466,<br>2021.04.22.)<br>· 2021년 공단<br>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br>(경영-2492,<br>2021.04.22.)<br>· 개인정보처리방침<br>개정(경영-2489,<br>2021.04.22.)  |

▶ 분야 11. 직장 내 인권보호

| 분야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            |   |    |  |  |  |  |   |
|------------|---|----|--|--|--|--|---|
| 점수<br>(12) | 12  | 12 |  |  |  |  |   |
| 1          | 공단은 발생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정하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내괴롭힘 금지에관한지침</li> <li>· 취업규정제11장 (직장내괴롭힘금지)</li> <li>·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8</li> <li>· 2021년인권경영감찰 근절및예방대책계획 (감사평가-467, 2021.02.10.)</li> </ul>                              |
| 2          | 공단은 관리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감정근로자 건강보호치유프로그램 운영계획 (경영-4606, 2021.07.14.)</li> <li>· 취업규정 제11장 (직장내괴롭힘금지)</li> <li>· 직장내괴롭힘 금지에관한지침</li> </ul>   |
| 3          |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접수가 용이하며, 다양한 신고채널을 가지고 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내괴롭힘 금지에관한지침</li> <li>· 취업규정제11장 (직장내괴롭힘금지)</li> <li>· 2021년인권경영감찰 근절및예방대책계획 (감사평가-467, 2021.02.10.)</li> <li>·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장(인권의구제)</li> <li>· 인권침해구제절차지침</li> </ul> |
| 4          |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연루자에 대하여 보직해임, 면직 등 행위 정도에 따른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내괴롭힘 금지에관한지침</li> <li>· 취업규정제11장 (직장내괴롭힘금지)</li> <li>·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8</li> <li>· 2021년인권경영감찰 근절및예방대책계획 (감사평가-467, 2021.02.10.)</li> </ul>                              |
| 5          | 공단은 조롱, 언어폭력,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요구, 왕따, 부당한 업무강요 등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구제절차를 이행한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내괴롭힘 금지에관한지침</li> <li>· 취업규정제11장 (직장내괴롭힘금지)</li> <li>· 2021년인권경영감찰 근절및예방대책계획 (감사평가-467, 2021.02.10.)</li> <li>·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장(인권의구제)</li> <li>· 인권침해구제절차지침</li> </ul> |
| 6          |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내괴롭힘 금지에관한지침</li> </ul>  |

|  |           |  |  |  |  |  |  |
|--|-----------|--|--|--|--|--|--|
|  | 주의를 기울인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규정제11장 (직장내괴롭힘금지)</li> <li>· 2021년인권경영감질근절및예방대책계획 (감사평가-467, 2021.02.10.)</li> <li>· 인권경영이행지침 제6장(인권의구제)</li> <li>· 인권침해구제절차지침</li> </ul> |
|--|-----------|--|--|--|--|--|--|

| 분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10  | 10 |       |     |       |       |  |
| 1       | 공단은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이나 신체접촉, 성적농담 등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감사평가-623,2021.03.30.)</li> <li>·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li> </ul>  |
| 2       |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감사평가-623,2021.03.30.)</li> <li>·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li> </ul>  |
| 3       |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사와 조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고충 상담원전문과정교육 (경영-1529, 2021.03.16.)</li> <li>· 성희롱성폭력고충 상담원심화과정교육 (경영-7200, 2020.11.24.)</li> <li>·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li> </ul>      |
| 4       |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제보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 (전문상담원, 치료비지원, 휴가부여 등)을 실시한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고충 상담원전문과정교육 (경영-1529, 2021.03.16.)</li> <li>· 2021년감정근로자 건강보호치유프로그램운영계획(경영-4606,2021.07.14.)</li> <li>·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li> </ul> |
| 5       | 공단은 개인과 집단,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정기적인 협의를 실시한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감사평가-623,2021.03.30.)</li> <li>· 단체교섭노동조합협정 (경영-4814, 2021.07.22.)</li> <li>·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li> </ul>                 |

**붙임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결과**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종합통계표(체육시설분야)**

|     | 분야             | 답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요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공정운영           | 20   |          |     |          |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16   | 4        |     |          |          |
| 3   | 안전보장           | 24   |          |     |          |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16   | 4        |     |          |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2   |          |     |          |          |
| 합 계 |                | 88   | 8        |     |          |          |

**세부 평가 지표(대상시설 : 종합운동장)**

**▶ 분야 1. 공정운영**

| 분야         | 공정운영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 구분         |   |    |          |     |          |          |   |
| 점수<br>(10) | 10  | 10 |          |     |          |          |   |
| 1          |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 제약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체육시설 운영조례, 규칙<br>· 종합운동장 외 4곳 운영계획 |
| 2          |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의견청취(민원, 제안 등)를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 ○  |          |     |          |          | · 홈페이지 고객소리<br>· 카카오톡 채널<br>· 고객소리함     |
| 3          |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경로를 통해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 · 운동장 홈페이지<br>· 카카오톡 채널<br>· 각종 현수막     |
| 4          | 체육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 및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 ○  |          |     |          |          | · 민원사무처리규정<br>· VOC운영계획<br>· 고객서비스현장    |

|   |  |   |  |  |  |  |   |
|---|--|---|--|--|--|--|---|
| 5 | 체육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매뉴얼 비치 및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하고 있다. | ○ |  |  |  |  |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예방지침비치<br>· 각종 법정교육이수<br>· 고충상담실 운영 |
|---|--|---|--|--|--|--|---|

▶ 분야 2.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분야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8  | 6 | 2     |     |       |       |  |
| 1       |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출입구, 화장실 등은 휠체어 이용 가능하며, 자체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장애인출입구, 화장실, 전동자동문등 사진자료<br>· 자체휠체어권고              |
| 2       | 체육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보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BF인증 추진<br>· 장애인주차장, 점자블럭 등 사진자료<br>·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
| 3       |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 요금(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 체육시설 이용료감면제12조<br>·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
| 4       | 체육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시설구비<br>·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추진<br>· 사인물 등 반영권고          |
| 5       | 체육시설은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수유실 등 사진<br>·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추진                      |

▶ 분야 3. 안전보장

| 분야      | 안전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2) | 12  | 12 |       |     |       |       |   |
| 1       | 체육시설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및 이용고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br>· 운동장-2016 외 6건<br>· 사진자료 |

|   |   |   |  |  |  |  |  |
|---|---|---|--|--|--|--|--|
| 2 | 체육시설은 구급함 및 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운동장-826<br>· 운동장-67<br>· 사진자료                  |
| 3 | 체육시설은 난간, 계단 미끄럼방지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운동장-352,2015<br>· 운동장-839,923<br>· 사진자료        |
| 4 | 체육시설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다. | ○ |  |  |  |  | · 운동장-2236<br>· 운동장-2243<br>(경찰서 합동점검)<br>· 사진자료 |
| 5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 ○ |  |  |  |  | · 운동장-213<br>· 운동장-1851외5건<br>· 사진자료             |
| 6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  |  |  |  | · 운동장-222외4건<br>· 사진자료                           |

▶ 분야 4. 근무자 인권보장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9   | 8 | 1     |     |       |       |  |
| 1       | 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 ○ |       |     |       |       | · 운동장-834외2건<br>· 사진자료   |
| 2       |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성희롱 등), 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운동장-207외3건<br>(성폭력예방교육)<br>(산업안전보건교육계획)<br>· 운동장-958외3건<br>· 교육수료증 |
| 3       | 환경미화, 경비 등 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업무직,현업직<br>휴게실<br>· 운동장-79<br>(냉난방기교체)<br>· 사진자료                   |
| 4       | 노동자의 감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운동장-1814<br>· 사진자료<br>· 자체 프로그램<br>운영권고                            |
| 5       | 노동자들의 고충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 ○ |       |     |       |       | · 경영-2139<br>· 고충처리매뉴얼<br>· 고충상담위원<br>· 노사협의회밴드                      |

▶ 분야 5. 지역주민 환경보장

| 분야 | 지역주민 환경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 아니오 | 정보 | 해당 |    |

|           |   |   |    |  |    |    |                                       |
|-----------|---|---|----|--|----|----|---------------------------------------|
|           |   |   | 필요 |  | 없음 | 없음 |                                       |
| 점수<br>(6) | 6   | 6 |    |  |    |    |                                       |
| 1         | 체육시설은 환경경영체계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 |    |  |    |    | · 운동장-658<br>(친환경경영계획)<br>· 우수정화조 설치  |
| 2         |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과 보건의 보장되도록 운영되고 있다.(코로나 감염예방 활동, 수질, 측정, 공개 등) | ○ |    |  |    |    | · 운동장-85<br>· 운동장-222외4건<br>· 사진자료    |
| 3         |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이산화탄소 저감 활동 등)          | ○ |    |  |    |    | · 운동장-1765<br>· 운동장-2059외3건<br>· 사진자료 |

## 세부 평가 지표(대상시설 : 국민체육센터)

### ▶ 분야 1. 공정운영

| 분야         | 공정운영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br>(10) | 10   | 10 |       |     |       |       |   |
| 1          |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 제약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br>· 국민체육센터 외 4곳 운영계획                |
| 2          |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의견청취(민원, 제안 등)를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 ○  |       |     |       |       | · 홈페이지 고객소리<br>· 국민체육센터 밴드, 카카오톡채널<br>· 고객의소리함<br>· 불만제로의 날 |
| 3          |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경로를 통해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 · 국제 홈페이지<br>· 밴드, 카카오톡채널<br>· 유튜브<br>· 각종 현수막              |
| 4          | 체육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 및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 ○  |       |     |       |       | · 민원사무처리규정<br>· VOC운영계획<br>· 고객센터서비스이행기준                    |
| 5          | 체육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매뉴얼 비치 및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하고 있다. | ○  |       |     |       |       | ·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대응 매뉴얼,예방지침비치<br>· 각종 법정교육이수<br>· 고충상담실 운영  |



▶ 분야 2.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분야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9  | 8 | 1     |     |       |       |   |
| 1       |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출입구, 화장실 등은 휠체어 이용 가능하며, 자체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장애인출입구, 화장실,전동자동문<br>· 휠체어전용경사판, 전용목욕의자, 자체휠체어구비등<br>· 사진자료 |
| 2       | 체육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보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장애인주차장, 점자블럭,휠체어 이동로 등<br>· 사진자료<br>·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획득        |
| 3       |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 요금(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이용료감면제24조<br>·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
| 4       | 체육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안내촉지도<br>·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획득<br>· 리플릿 등 반영권고                   |
| 5       | 체육시설은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수유실 등 사진<br>·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획득                                |

▶ 분야 3. 안전보장

| 분야      | 안전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2) | 12  | 12 |       |     |       |       |   |
| 1       | 체육시설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및 이용고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체육지도자배치기준<br>· 국제-12외 2건<br>· 안전근무일지<br>·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인증<br>· 사진자료 |
| 2       | 체육시설은 구급함 및 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국제-12외 2건<br>· 사진자료<br>·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인증                            |
| 3       | 체육시설은 난간, 계단 미끄럼방지                                  | ○  |       |     |       |       | · 국제-1404외 4건   |

|   |   |   |  |  |  |  |   |
|---|---|---|--|--|--|--|---|
|   |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사진자료  |
| 4 | 체육시설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다. | ○ |  |  |  |  | · 국체-1152외 3건<br>· 범죄예방우수시설 인증, 상시점검 (경찰서 합동점검)<br>· 사진자료 |
| 5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 ○ |  |  |  |  | · 국체-2056외 2건<br>· 매월 안전점검<br>· 사진자료                      |
| 6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  |  |  |  | · 국체-1963외 2건<br>· 사진자료                                   |

▶ 분야 4. 근무자 인권보장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9   | 8 | 1     |     |       |       |   |
| 1       | 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 ○ |       |     |       |       | · 국체-910 외 2건<br>· 시설구비<br>· 사진자료   |
| 2       |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성희롱 등), 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국체-62 외 5건<br>· 국체-659외 2건 (성폭력예방교육)<br>(안전관리기본계획)<br>· 사진자료<br>· 교육수료증 |
| 3       | 환경미화, 경비 등 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업무직,현업직<br>강사(남여)휴게실<br>· 사진자료  |
| 4       | 노동자의 감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국체-1750<br>· 국체-2148<br>· 사진자료<br>· 자체 프로그램<br>운영권고                     |
| 5       | 노동자들의 고충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 ○ |       |     |       |       | · 경영-2139<br>· 고충처리매뉴얼<br>· 고충상담위원<br>· 고충상담실<br>· 노사협의회밴드                |

▶ 분야 5. 지역주민 환경보장

| 분야 | 지역주민 환경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   |   |  |  |  |  |   |
|-----------|---|---|--|--|--|--|---|
| 점수<br>(6) | 6   | 6 |  |  |  |  |   |
| 1         | 체육시설은 환경경영체계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 |  |  |  |  | · 오수정화조 설치<br>· 가스사고배상책임<br>· 수영장 수질관리<br>· 국제-917 외 2건 |
| 2         |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과 보건의 보장되도록 운영되고 있다.(코로나 감염예방 활동, 수질, 측정, 공개 등) | ○ |  |  |  |  | · 국제-1363 외 2건<br>· 사진자료                                |
| 3         |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이산화탄소 저감 활동 등)          | ○ |  |  |  |  | · 국제-585 외 2건<br>· 사진자료                                 |

## 세부 평가 지표(대상시설 : 주민편익시설)

### ▶ 분야 1. 공정운영

| 분야         | 공정운영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br>(10) | 10   | 10 |       |     |       |       |   |
| 1          |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 제약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br>· 주민편익시설 외 4곳 운영계획                   |
| 2          |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의견청취(민원, 제안 등)를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 ○  |       |     |       |       | · 홈페이지 고객센터<br>· 주민편익시설 밴드, 카카오톡채널<br>· 고객센터소리함<br>· 불만제로의 날    |
| 3          |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경로를 통해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 · 주민 홈페이지<br>· 밴드, 카카오톡채널<br>· 각종 현수막                           |
| 4          | 체육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 및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 ○  |       |     |       |       | · 민원사무처리규정<br>· VOC운영계획<br>· 고객센터서비스행기준                         |
| 5          | 체육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매뉴얼 비치 및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하고 있다. | ○  |       |     |       |       |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대응 매뉴얼, 예방지침비치<br>· 각종 법정교육이수<br>· 주민-722 외 2건 |

### ▶ 분야 2.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분야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   |              |       |       | 근거   |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br>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br>(10) |                 | 9  | 8 | 1            |       |       |  |
| 1          |                 |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출입구, 화장실 등은 휠체어 이용 가능하며, 자체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장애인출입구, 화장실,전동자동문<br>· 휠체어전용경사판, 전용목용의자, 자체 휠체어구비등<br>· 사진자료 |
| 2          |                 | 체육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보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장애인주차장, 점자블럭,휠체어 이동로 등<br>· 사진자료<br>· 체육시설<br>안전경영 인증예정      |
| 3          |                 |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 요금(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양산시<br>주민편익시설<br>이용료감면제29조<br>· 체육시설<br>안전경영 인증예정            |
| 4          |                 | 체육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안내촉지도,안내문<br>· 체육시설<br>안전경영 인증예정<br>· 리플릿 등 반영권고             |
| 5          |                 | 체육시설은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수유실 등 사진<br>· 체육시설<br>안전경영 인증예정                              |

▶ 분야 3. 안전보장

| 분야         | 안전 보장 |   |    |              |       |       | 근거  |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br>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br>(12) |       | 12  | 12 |              |       |       |   |
| 1          |       | 체육시설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및 이용고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체육지도자배치기준<br>· 주민-160외 2건<br>· 안전근무일지<br>· 생존수영<br>교육수영장 안전인증<br>· 사진자료 |
| 2          |       | 체육시설은 구급함 및 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주민-686<br>· 사진자료<br>· 생존수영<br>교육수영장 안전인증                                |
| 3          |       | 체육시설은 난간, 계단 미끄럼방지 및 안전올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주민-1327외 1건<br>· 사진자료   |

|   |   |   |  |  |  |  |   |
|---|---|---|--|--|--|--|---|
| 4 | 체육시설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다. | ○ |  |  |  |  | · 주민-1164외 2건<br>· 범죄예방우수시설 인증, 상시점검 (경찰서 합동점검)<br>· 사진자료 |
| 5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 ○ |  |  |  |  | · 주민-129외 2건<br>· 매월 안전점검<br>· 사진자료                       |
| 6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  |  |  |  | · 주민-203외 1건<br>· 사진자료                                    |

▶ 분야 4. 근무자 인권보장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4) | 4   | 4 |       |     |       |       |  |
| 1      | 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 ○ |       |     |       |       | · 주민-580외 2건<br>· 용품 사진자료  |
| 2      |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성희롱 등), 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주민-683외 5건<br>· 주민-27외 3건 (성폭력예방교육)<br>(산업안전보건교육)<br>· 사진자료<br>· 교육수료증 |
| 3      | 환경미화, 경비 등 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업무직,현업직<br>긴사휴게실(남여)<br>· 사진자료   |
| 4      | 노동자의 감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주민-399<br>· 주민-713 (자체프로그램운영)<br>· 사진자료                                |
| 5      | 노동자들의 고충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 ○ |       |     |       |       | · 경영-2139<br>· 고충처리매뉴얼<br>· 고충상담위원<br>· 고충상담실<br>· 노사협의회밴드               |

▶ 분야 5. 지역주민 환경보장

| 분야     | 지역주민 환경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6) | 6         | 6 |       |     |       |       |    |

|   |   |   |  |  |  |  |   |
|---|---|---|--|--|--|--|---|
| 1 | 체육시설은 환경경영체계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 |  |  |  |  | · 오수정화조 설치<br>· 가스사고배상책임<br>· 수영장 수질관리<br>· 주민-463 외 1건 |
| 2 |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과 보건의 보장되도록 운영되고 있다.(코로나 감염예방 활동, 수질, 측정, 공개 등) | ○ |  |  |  |  | · 주민-203 외 3건<br>· 사진자료                                 |
| 3 |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이산화탄소 저감 활동 등)          | ○ |  |  |  |  | · 주민-739 외 2건<br>· 사진자료                                 |

## 세부 평가 지표(대상시설 : 웅상문화체육센터)

### ▶ 분야 1. 공정운영

| 분야      | 공정운영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10   | 10 |       |     |       |       |   |
| 1       |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 제약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규칙<br>· 웅상문화체육센터 외 4곳 운영계획               |
| 2       |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의견청취(민원, 제안 등)를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 ○  |       |     |       |       | · 홈페이지 고객소리<br>· 카카오톡채널<br>· 고객소리함<br>· 불만제로의 날               |
| 3       |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경로를 통해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 · 응체 홈페이지<br>· 카카오톡채널<br>· 지역온라인카페<br>· 각종 현수막                |
| 4       | 체육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 및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 ○  |       |     |       |       | · 민원사무처리규정<br>· VOC운영계획<br>· 고객서비스이행기준                        |
| 5       | 체육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매뉴얼 비치 및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하고 있다. | ○  |       |     |       |       | ·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대응 매뉴얼,예방지침비치<br>· 각종 법정교육이수<br>· 응체-2476외 1건 |

### ▶ 분야 2.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분야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 아니오 | 정보 | 해당 |    |

|            |  |    | 필요 |  | 없음 | 없음 |   |
|------------|--|----|----|--|----|----|---|
| 점수<br>(10) | 10   | 10 |    |  |    |    |   |
| 1          |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출입구, 화장실 등은 휠체어 이용 가능하며, 자체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장애인출입구, 화장실,전동자동문<br>휠체어전용경사로,<br>전용목용의자,<br>자체휠체어구비등<br>· 사진자료 |
| 2          | 체육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보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장애인주차장,<br>점자블럭,휠체어<br>이동로 등<br>· 사진자료<br>· 체육시설<br>안전경영 인증예정   |
| 3          |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 요금(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br>문화체육센터<br>이용료감면제24조<br>· 체육시설<br>안전경영 인증예정               |
| 4          | 체육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안내촉지도,<br>· 웅체-1629외2건<br>(외국인이용안내문)<br>· 체육시설<br>안전경영 인증예정     |
| 5          | 체육시설은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수유실 등 사진<br>· 체육시설<br>안전경영 인증예정                                 |

▶ 분야 3. 안전보장

| 분야         | 안전보장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br>(12) | 12  | 12 |       |     |       |       |  |
| 1          | 체육시설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및 이용고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체육지도자배치기준<br>· 웅체-26외 3건<br>· 안전근무일지<br>· 생존수영<br>교육수영장 안전인증<br>· 사진자료 |
| 2          | 체육시설은 구급함 및 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웅체-1070<br>· 사진자료<br>· 생존수영<br>교육수영장 안전인증                              |
| 3          | 체육시설은 난간, 계단 미끄럼방지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웅체-604외 1건<br>· 사진자료   |
| 4          | 체육시설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 ○  |       |     |       |       | · 웅체-1516외 2건<br>· 범죄예방우수시설<br>인증, 상시점검                                  |

|   |                                     |   |  |  |  |  |  |
|---|-------------------------------------|---|--|--|--|--|--|
|   | 점검하고 있다.                            |   |  |  |  |  | (경찰서합동점검)<br>· 사진자료                                |
| 5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 ○ |  |  |  |  | · 응체-1502외 8건<br>· 매월 안전점검<br>· 위험성평가 실시<br>· 사진자료 |
| 6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  |  |  |  | · 응체-2394외 3건<br>· 사진자료                            |

▶ 분야 4. 근무자 인권보장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8   | 6 | 2     |     |       |       |   |
| 1       | 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 ○ |       |     |       |       | · 응체-220외 2건<br>· 용품 사진자료   |
| 2       |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성희롱 등), 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응체-312외 2건<br>· 응체-1294외 3건<br>(안전관리기본계획)<br>(성폭력예방교육)<br>· 사진자료<br>· 교육수료증 |
| 3       | 환경미화, 경비 등 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업무직, 현업직<br>· 김사휴게실<br>· 사진자료<br>· 남아휴게실구분권고                                |
| 4       | 노동자의 감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응체-1941외 2건<br>· 사진자료<br>· 자체 프로그램<br>· 운영권고                                |
| 5       | 노동자들의 고충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 ○ |       |     |       |       | · 경영-2139<br>· 고충처리매뉴얼<br>· 고충상담위원<br>· 노사협의회밴드<br>· 응체-91외 1건                |

▶ 분야 5. 지역주민 환경보장

| 분야     | 지역주민 환경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6) | 6                           | 6 |       |     |       |       |                                       |
| 1      | 체육시설은 환경경영체계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 |       |     |       |       | · 오수정화조 설치<br>· 하수처리장방류<br>· 수영장 수질관리 |



|   |   |   |  |  |  |  |  |
|---|---|---|--|--|--|--|--|
|   |   |   |  |  |  |  | · 응체-769<br>(친환경추진계획)<br>· 응체-569외 4건<br>· 사진자료  |
| 2 |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과 보건의 보장되도록 운영되고 있다.(코로나 감염예방 활동, 수질, 측정, 공개 등) | ○ |  |  |  |  | · 응체-1502<br>(위험성평가)<br>· 응체-1662외 3건<br>· 사진자료  |
| 3 |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이산화탄소 저감 활동 등)          | ○ |  |  |  |  | · 응체-769<br>(친환경추진계획)<br>· 응체-2169외 1건<br>· 사진자료 |

### 종합통계표(문화환경분야)

|     | 이슈             | 답변결과 |       |     |       |       |
|-----|----------------|------|-------|-----|-------|-------|
|     |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1   | 공정운영           | 24   |       |     |       | 1     |
| 2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 7    | 5     |     |       | 13    |
| 3   | 안전보장           | 26   | 2     |     |       | 2     |
| 4   | 근무자 인권보호       | 20   | 5     |     |       |       |
| 5   | 지역주민 환경보장      | 15   |       |     |       |       |
| 합 계 |                | 92   | 12    |     |       | 16    |

### 세부 평가 지표(대상시설 : 문화예술회관)

#### ▶ 분야 1. 공정운영

| 분야         | 공정운영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br>(10) | 10  | 10 |       |     |       |       |   |
| 1          | 문화환경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 제약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br>· 문화예술회관 운영계획 |
| 2          | 문화환경시설 이용고객의 의견청취                         | ○  |       |     |       |       | · 홈페이지 고객소리                             |

|   |  |   |  |  |  |  |  |
|---|--|---|--|--|--|--|--|
|   | (민원, 제안 등)를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   |  |  |  |  | · 카카오톡채널<br>· 고객의소리함<br>· 고객만족도 조사                           |
| 3 | 문화환경시설 이용고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경로를 통해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 · 문예 홈페이지<br>· 카카오톡채널<br>· SNS(인스타,네이버카페,카카오등)<br>· 현수막,포스터  |
| 4 | 문화환경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 및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 ○ |  |  |  |  | · 민원사무처리규정<br>· VOC운영계획<br>· 고객서비스이행기준                       |
| 5 | 문화환경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매뉴얼 비치 및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하고 있다. | ○ |  |  |  |  | ·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대응 매뉴얼,예방지침비치<br>· 각종 법정교육이수<br>· 문예-513외 3건 |

▶ 분야 2.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분야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8) | 6  | 4 | 2     |     |       |       |   |
| 1      | 문화환경시설에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출입구, 화장실등은 휠체어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장애인출입구, 화장실,휠체어전용경사로,안내도등<br>· 사진자료<br>·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
| 2      | 문화환경시설에는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및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장애인주차장, 승강기,휠체어전용석<br>· 사진자료<br>· 자체휠체어권고                   |
| 3      | 문화환경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 요금(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 문화예술키오시설및 운영조례제9조                                       |
| 4      | 문화환경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안내촉지도,<br>· 외국어안내도표지<br>· 외국어안내방송<br>· 사진자료<br>· 리플릿 등 반영권고 |
| 5      | 문화환경시설은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대상시설아님  |

▶ 분야 3. 안전보장

| 분야 | 안전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 아니오 | 정보 | 해당 |    |

| 점수         |   |    | 필요 |  | 없음 | 없음 |   |
|------------|---|----|----|--|----|----|---|
| 점수<br>(12) | 12  | 12 | 0  |  |    |    |   |
| 1          | 문화환경시설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및 이용고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안전관리직원 및 하우스어써 배치<br>· 문예-1366외 7건<br>· 사진자료    |
| 2          | 문화환경시설은 구급함 및 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문예-1655<br>· 사진자료                               |
| 3          | 문화환경시설은 난간, 계단 미끄럼방지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문예-966외 1건<br>· 미끄럼방지<br>· 사진자료                 |
| 4          | 문화환경시설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  |    |  |    |    | · 문예-1746외 1건<br>· 사진자료                           |
| 5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 ○  |    |  |    |    | · 문예-1610외 8건<br>· 매월 안전점검<br>· 위험성평가실시<br>· 사진자료 |
| 6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    |  |    |    | · 문예-149외 3건<br>· 사진자료                            |

▶ 분야 4. 근무자 인권보호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br>(10) | 9   | 9 | 1     |     |       |       |   |
| 1          | 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 ○ |       |     |       |       | · 문예-1497외 2건<br>· 용품 사진자료  |
| 2          |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성희롱 등), 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문예-1366외 3건<br>· 문예-423외 1건<br>(안전관리기본계획)<br>(성폭력예방교육)<br>· 사진자료<br>· 교육수료증 |
| 3          | 환경미화, 경비 등 직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업무직,현업직 휴게실<br>· 사진자료   |
| 4          | 노동자의 감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문예-1469<br>· 사진자료<br>· 자체 프로그램 운영권고   |
| 5          | 노동자들의 고충상담 등을 수행할                             | ○ |       |     |       |       | · 경영-2139<br>· 고충처리매뉴얼  |

|                         |  |  |  |  |  |  |                       |
|-------------------------|--|--|--|--|--|--|-----------------------|
| 수 있는 장치 또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  |  |  |  |  |  | · 고충상담위원<br>· 노사협의회밴드 |
|-------------------------|--|--|--|--|--|--|-----------------------|

▶ 분야 5. 지역주민 환경보장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6) | 6   | 6 |       |     |       |       |  |
| 1      | 문화환경시설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 |       |     |       |       | · 우수정화조 설치<br>· 문예-489 (친환경추진계획)<br>· 사진자료   |
| 2      | 문화환경시설은 지역주민이 문화환경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과 보건의 보장되도록 운영되고 있다.(코로나 감염예방 활동, 수질, 측정, 공개 등) | ○ |       |     |       |       | · 문예-1102 (위험성평가)<br>· 문예-245외 1건<br>· 사진자료  |
| 3      | 문화환경시설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이산화탄소 저감 활동 등)            | ○ |       |     |       |       | · 문예-489 (친환경추진계획)<br>· 문예-756외 4건<br>· 사진자료 |

세부 평가 지표(대상시설 : 대운산휴양림)

▶ 분야 1. 공정운영

| 분야      | 공정운영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10  | 10 |       |     |       |       |   |
| 1       | 문화환경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 제약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br>· 대운산휴양림 운영계획                             |
| 2       | 문화환경시설 이용고객의 의견청취(민원, 제안 등)를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 ○  |       |     |       |       | · 홈페이지 고객의소리<br>· 카카오톡채널<br>· 고객의소리함<br>· 고객만족도 조사              |
| 3       | 문화환경시설 이용고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경로를 통해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 · 대운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br>· 카카오톡채널<br>· SNS(인스타그램,네이버카페,카카오등)<br>· 현수막 |
| 4       | 문화환경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 및 처리 매뉴얼이                 | ○  |       |     |       |       | · 민원사무처리규정<br>· VOC운영계획   |

|   |  |   |  |  |  |  |   |
|---|--|---|--|--|--|--|---|
|   | 마련되어 있다.   |   |  |  |  |  | · 고객서비스이행기준                                   |
| 5 | 문화환경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매뉴얼 비치 및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하고 있다. | ○ |  |  |  |  | ·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대응 매뉴얼, 예방지침비치<br>· 각종 법정교육이수 |

▶ 분야 2.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분야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8) | 7  | 6 | 1     |     |       |       |  |
| 1      | 문화환경시설에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출입구, 화장실등은 휠체어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장애인출입구, 화장실, 휠체어전용 경사로, 안내도등<br>· 사진자료 |
| 2      | 문화환경시설에는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및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장애인주차장,<br>· 자체휠체어권고                   |
| 3      | 문화환경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 요금(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제5조                   |
| 4      | 문화환경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외국어안내리플릿<br>· 사진자료                     |
| 5      | 문화환경시설은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대상시설아님                                 |

▶ 분야 3. 안전보장

| 분야      | 안전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2) | 12  | 12 |       |     |       |       |  |
| 1       | 문화환경시설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및 이용고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휴양-639<br>· 휴양-42외 7건<br>· 사진자료<br>· 교육수료증 |
| 2       | 문화환경시설은 구급함 및 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휴양-503외 1건<br>· 사진자료                       |

|   |  |   |  |  |  |  |  |
|---|--|---|--|--|--|--|--|
| 3 | 문화환경시설은 난간, 계단 미끄럼 방지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휴양-723외 2건<br>· 안전난간,미끄럼 방지,안전울타리<br>· 사진자료    |
| 4 | 문화환경시설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 |  |  |  |  | · 휴양-970외 2건 (경찰서합동점검)<br>· 사진자료                 |
| 5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 ○ |  |  |  |  | · 휴양-803외 8건<br>· 매월 안전점검<br>· 위험성평가실시<br>· 사진자료 |
| 6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  |  |  |  | · 휴양-637외 11건<br>· 사진자료                          |

▶ 분야 4. 근무자 인권보호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9   | 8 | 1     |     |       |       |  |
| 1       | 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 ○ |       |     |       |       | · 휴양-1278외 2건<br>· 용품 사진자료                                   |
| 2       |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성희롱 등), 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휴양-42외 7건 (성폭력예방교육)<br>(산업안전보건교육)<br>· 교육수료증               |
| 3       | 환경미화, 경비 등 직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업무직,현업직 휴게실<br>· 사진자료                                      |
| 4       | 노동자의 감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경영-4616<br>· 사진자료<br>· 자체 프로그램 운영권고                        |
| 5       | 노동자들의 고충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 ○ |       |     |       |       | · 휴양-1589<br>· 경영-2139<br>· 고충처리매뉴얼<br>· 고충상담위원<br>· 노사협의회밴드 |

▶ 분야 5. 지역주민 환경보장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6) | 6                  | 6 |       |     |       |       |            |
| 1      | 문화환경시설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 ○ |       |     |       |       | · 우수정화조 설치 |

|   |   |   |  |  |  |  |  |
|---|---|---|--|--|--|--|--|
|   | 및 유지하고 있다.  |   |  |  |  |  | · 휴양-432외 1건<br>(친환경시설계획)<br>· 사진자료                |
| 2 | 문화환경시설은 지역주민이 문화환경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과 보건의 보장되도록 운영되고 있다.(코로나 감염예방 활동, 수질, 측정, 공개 등) | ○ |  |  |  |  | · 휴양-803외 1건<br>(위험성평가)<br>· 휴양-637외 10건<br>· 사진자료 |
| 3 | 문화환경시설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이산화탄소 저감 활동 등)            | ○ |  |  |  |  | · 휴양-432<br>(친환경시설계획)<br>· 휴양-173외 7건<br>· 사진자료    |

## 세부 평가 지표(대상시설 : 환경시설)

### ▶ 분야 1. 공정운영

| 분야        | 공정운영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br>(8) | 8  | 8 |       |     |       |       |   |
| 1         | 문화환경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 제약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일반산업단지관리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br>· 고객서비스이행기준                 |
| 2         | 문화환경시설 이용고객의 의견청취(민원, 제안 등)를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 ○ |       |     |       |       | · 홈페이지 고객센터소리<br>· 환경-883외 2건<br>(환경기술지원운영)                   |
| 3         | 문화환경시설 이용고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경로를 통해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 · 환경시설 홈페이지<br>· 환경정보공개시스템<br>· 수질TMS사업장현황                    |
| 4         | 문화환경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 및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   |       |     |       | ○     | · 해당사항없음  |
| 5         | 문화환경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매뉴얼 비치 및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하고 있다. | ○ |       |     |       |       | ·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대응 매뉴얼, 예방지침비치<br>· 각종 법정교육이수<br>· 환경-59외 12건 |

### ▶ 분야 2.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분야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 아니오 | 정보 | 해당 |    |

|           |  |  |    |  |    |    |        |
|-----------|--|--|----|--|----|----|--------|
|           |  |  | 필요 |  | 없음 | 없음 |        |
| 점수<br>(0) |  |  |    |  |    | 5  |        |
| 1         | 문화환경시설에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출입구, 화장실등은 휠체어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2         | 문화환경시설에는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및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3         | 문화환경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 요금(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4         | 문화환경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5         | 문화환경시설은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분야 3. 안전보장

| 분야         | 안전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br>(10) | 9   | 8 | 1     |     |       |       |   |
| 1          | 문화환경시설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및 이용고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환경-14<br>· 환경-60외 18건 (안전관리기본계획)<br>· 사진자료    |
| 2          | 문화환경시설은 구급함 및 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사진자료<br>· 제세동기권고                              |
| 3          | 문화환경시설은 난간, 계단 미끄럼 방지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환경-140외 2건<br>· 안전난간대<br>· 사진자료               |
| 4          | 문화환경시설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5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 ○ |       |     |       |       | · 환경-34외 16건<br>· 매월 안전점검<br>· 작업환경측정<br>· 사진자료 |
| 6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       |     |       |       | · 환경-582외 14건<br>· 사진자료                         |



▶ 분야 4. 근무자 인권보호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9   | 8 | 1     |     |       |       |   |
| 1       | 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 ○ |       |     |       |       | · 환경-255외 1건<br>· 용품 사진자료                       |
| 2       |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성희롱 등), 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환경-59외 22건 (성폭력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br>· 교육수료증     |
| 3       | 환경미화, 경비 등 직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일반직 업무직 등 휴게실<br>· 사진자료                       |
| 4       | 노동자의 감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경영-4616<br>· 사진자료<br>· 자체 프로그램 운영권고           |
| 5       | 노동자들의 고충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 ○ |       |     |       |       | · 경영-2139<br>· 고충처리매뉴얼<br>· 고충상담위원<br>· 노사협의회밴드 |

▶ 분야 5. 지역주민 환경보장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6) | 6   | 6 |       |     |       |       |   |
| 1      | 문화환경시설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 |       |     |       |       | · 오수정화조 설치<br>· 환경-395외 3건 (친환경시설계획)                        |
| 2      | 문화환경시설은 지역주민이 문화환경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과 보건의 보장되도록 운영되고 있다.(코로나 감염예방 활동, 수질, 측정, 공개 등) | ○ |       |     |       |       | · 환경-34외 8건 (매월시설물점검)<br>· 환경-300외 22건 (안전관리기본계획)<br>· 사진자료 |
| 3      | 문화환경시설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이산화탄소 저감 활동 등)            | ○ |       |     |       |       | · 환경-395 (친환경시설계획)<br>· 환경-375외 12건<br>· 사진자료               |

## 세부 평가 지표(대상시설 : 유산매립장)

### ▶ 분야 1. 공정운영

| 분야      | 공정운영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10   | 10 |       |     |       |       |   |
| 1       | 문화환경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 제약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폐기물관리<br>에 관한조례<br>· 고객서비스이행기준                                 |
| 2       | 문화환경시설 이용고객의 의견청취(민원, 제안 등)를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 ○  |       |     |       |       | · 홈페이지 고객소리<br>· 매립장-892외 2건<br>· 민원처리대장<br>· 주민협의체 운영              |
| 3       | 문화환경시설 이용고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경로를 통해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 · 공단 홈페이지<br>자료실<br>· 매립장 홈페이지<br>· 주민협의회 운영                        |
| 4       | 문화환경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 및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 ○  |       |     |       |       | · 민원사무처리규정<br>· VOC운영계획<br>· 고객서비스이행기준                              |
| 5       | 문화환경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매뉴얼 비치 및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하고 있다. | ○  |       |     |       |       | · 직장내괴롭힘,<br>성희롱성폭력대응<br>매뉴얼,예방지침비치<br>· 각종 법정교육이수<br>· 매립장-359외 4건 |

### ▶ 분야 2.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분야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   |       |     |       |       |        |
| 1       | 문화환경시설에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출입구, 화장실등은 휠체어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2       | 문화환경시설에는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및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3       | 문화환경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 요금(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  |  |  |  |  |   |        |
|---|--|--|--|--|--|---|--------|
| 4 | 문화환경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5 | 문화환경시설은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분야 3. 안전보장

| 분야      | 안전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9   | 8 | 1     |     |       |       |  |
| 1       | 문화환경시설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및 이용고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매립장-9<br>· 매립장-303외 10건 (안전관리기본계획 (산업안전보건교육)<br>· 사진자료 |
| 2       | 문화환경시설은 구급함 및 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사진자료<br>· 제세동기권고                                       |
| 3       | 문화환경시설은 난간, 계단 미끄럼 방지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매립장-196외 2건<br>· 안전울타리,<br>펜스설치<br>· 사진자료              |
| 4       | 문화환경시설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5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 ○ |       |     |       |       | · 매립장-156외 9건<br>· 매월 안전점검<br>· 사진자료                     |
| 6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       |     |       |       | · 매립장-27외 9건 (관내방역지원80회)<br>· 사진자료                       |

▶ 분야 4. 근무자 인권보호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9   | 8 | 1     |     |       |       |  |
| 1       | 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 ○ |       |     |       |       | · 매립장-739외 5건<br>· 용품 사진자료                       |
| 2       |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성희롱 등), 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매립장-47외 11건 (성폭력예방교육)<br>(산업안전보건교육)<br>· 교육수료증 |

|   |   |   |   |  |  |  |   |
|---|---|---|---|--|--|--|---|
| 3 | 환경미화, 경비 등 직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일반직 업무직 등 휴게실(에어컨등)<br>· 사진자료                 |
| 4 | 노동자의 감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경영-4616<br>· 사진자료<br>· 자체 프로그램 운영권고           |
| 5 | 노동자들의 고충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 ○ |   |  |  |  | · 경영-2139<br>· 고충처리매뉴얼<br>· 고충상담위원<br>· 노사협의회밴드 |

▶ 분야 5. 지역주민 환경보장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6) | 6   | 6 |       |     |       |       |   |
| 1      | 문화환경시설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 |       |     |       |       | · 오수정화조 설치<br>· LFG 포집관 설치<br>· 매립장-343외 3건 (친환경시설계획)         |
| 2      | 문화환경시설은 지역주민이 문화환경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과 보건이 보장되도록 운영되고 있다.(코로나 감염예방 활동, 수질, 측정, 공개 등) | ○ |       |     |       |       | · 매립장-119외 8건 (매월시설물점검)<br>· 매립장-274외 3건 (안전관리기본계획)<br>· 사진자료 |
| 3      | 문화환경시설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이산화탄소 저감 활동 등)            | ○ |       |     |       |       | · 매립장-343 (친환경시설계획) (주민협의회)<br>· 매립장-27외 10건<br>· 사진자료        |

세부 평가 지표(대상시설 : 공원주차관리)

▶ 분야 1. 공정운영

| 분야      | 공정운영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10) | 10  | 10 |       |     |       |       |  |
| 1       | 문화환경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 제약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낙동강수변 공원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지침<br>· 양산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

|   |  |   |  |  |  |  |  |
|---|--|---|--|--|--|--|--|
|   |  |   |  |  |  |  | · 공원주차관리 운영계획                                    |
| 2 | 문화환경시설 이용고객의 의견청취 (민원, 제안 등)를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 ○ |  |  |  |  | · 홈페이지 고객소리<br>· 카카오톡채널<br>· 인스타그램<br>· 고객소리함    |
| 3 | 문화환경시설 이용고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경로를 통해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 · 공원주차홈페이지<br>· 카카오톡채널<br>· 인스타그램<br>· 현수막.배너    |
| 4 | 문화환경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 및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 ○ |  |  |  |  | · 민원사무처리규정<br>· VOC운영계획<br>· 고객서비스이행기준           |
| 5 | 문화환경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매뉴얼 비치 및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하고 있다. | ○ |  |  |  |  | ·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대응 매뉴얼,예방지침비치<br>· 각종 법정교육이수 수료증 |

▶ 분야 2.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분야     |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 (8) | 6  | 4 | 2     |     |       |       |                                      |
| 1      | 문화환경시설에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출입구, 화장실등은 휠체어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장애인출입구, 화장실,안내도등<br>· 사진자료         |
| 2      | 문화환경시설에는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및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승강기 해당없음<br>· 장애인주차장,<br>· 자체휠체어권고 |
| 3      | 문화환경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 요금(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양산시낙동강수변 공원시설물관리 및운영조례제9조          |
| 4      | 문화환경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점자안내판<br>· 사진자료<br>· 리플릿 등 반영권고    |
| 5      | 문화환경시설은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해당없음                               |

▶ 분야 3. 안전보장

| 분야 | 안전보장 |   |    |     |    |    | 근거 |
|----|------|---|----|-----|----|----|----|
|    | 지표명  | 예 | 보완 | 아니오 | 정보 | 해당 |    |

|            |   |    |    |  |    |    |   |
|------------|---|----|----|--|----|----|---|
|            |   |    | 필요 |  | 없음 | 없음 |   |
| 점수<br>(12) | 12  | 12 |    |  |    |    |   |
| 1          | 문화환경시설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및 이용고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공원주차-88외 5건<br>· 공원주차-609외 5건<br>(안전관리기본계획)<br>· 사진자료 |
| 2          | 문화환경시설은 구급함 및 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 · 사진자료<br>· 구급함, 제세동기 있음                                |
| 3          | 문화환경시설은 난간, 계단 미끄럼 방지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공원주차-1240외 3건<br>· 안전그물망, 휨스, 텡스텐 등<br>· 사진자료         |
| 4          | 문화환경시설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  |    |  |    |    | · 공원주차-1604외1건<br>(경찰서합동점검)<br>· 사진자료                   |
| 5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 ○  |    |  |    |    | · 공원주차-89외 7건<br>· 매월 안전점검<br>· 안전점검 일지<br>· 사진자료       |
| 6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    |  |    |    | · 공원주차-856외 4건<br>· 사진자료                                |

▶ 분야 4. 근무자 인권보호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 점수<br>(10) | 9   | 8 | 1     |     |       |       |   |
| 1          | 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용품 지급하고 있다.                       | ○ |       |     |       |       | · 공원주차-729외 4건<br>· 용품 사진자료                         |
| 2          |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성희롱 등), 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공원주차-88외 7건<br>(성폭력예방교육)<br>(산업안전보건교육)<br>· 교육수료증 |
| 3          | 환경미화, 경비 등 직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 |       |     |       |       | · 업무직, 현업직 등 휴게실<br>· 사진자료                          |
| 4          | 노동자의 감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     |     |       |       | · 경영-4616<br>· 사진자료<br>· 자체 프로그램 운영권고               |
| 5          | 노동자들의 고충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 ○ |       |     |       |       | · 경영-2139<br>· 고충처리매뉴얼<br>· 고충상담위원<br>· 노사협의회밴드     |

▶ 분야 5. 지역주민 환경보장

| 분야        | 근무자 인권보장  |   |          |     |          |          | 근거   |
|-----------|---|---|----------|-----|----------|----------|--|
| 구분        | 지표명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 점수<br>(6) | 6   | 6 |          |     |          |          |  |
| 1         | 문화환경시설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 |          |     |          |          | · 오수정화조 설치<br>· 공원주차-658외 1건<br>(친환경추진계획)                            |
| 2         | 문화환경시설은 지역주민이 문화환경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과 보건의 보장되도록 운영되고 있다.(코로나 감염예방 활동, 수질, 측정, 공개 등) | ○ |          |     |          |          | · 공원주차-89외 7건<br>· 매월 안전점검<br>· 공원주차-609외 5건<br>(안전관리기본계획)<br>· 사진자료 |
| 3         | 문화환경시설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이산화탄소 저감 활동 등)            | ○ |          |     |          |          | · 공원주차-658외 1건<br>(친환경추진계획)<br>· 공원주차-856외 4건<br>· 사진자료              |